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7호 2018. 4. 13.(금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70호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하동군 조례 제2271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 하동군 조례 제2272호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11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5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14
- 하동군 고시 제2018-51호 하동편백휴양림 지형도면 변경고시..... 17
- 하동군 고시 제2018-5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최정\*)..... 18
- 하동군 고시 제2018-5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19
- 하동군 고시 제2018-5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하동군수(사기마을농로 정비공사)) .. 20
- 하동군 고시 제2018-5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공진) ..... 21

##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 2018-394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 하동군 공고 제 2018-395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8
- 하동군 공고 제 2018-397호 하동군 청년 일자리 창출 자원에 관한 조례안 ..... 33
- 하동군 공고 제 2018-408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외1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1
- 하동군 공고 제 2018-411호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 입법예고 .. 48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343호 하동군 일반임기제 공고 ..... 72
- 하동군 공고 제2018-354호 하동군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법인 모집공고 ..... 92
- 하동군 공고 제2018-377호 재난관리실태 공시(2017년도)..... 128
- 하동군 공고 제2018-387호 2018년 하동군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공고..... 160
- 하동군 공고 제2018-429호 2018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고 안내 .. 173
- 하동군 공고 제2018-431호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재공고) ..... 190
- 하동군 공고 제2018-441호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202
- 하동군 공고 제2018-443호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05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조정실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70 호

###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 교부절차에 따라” 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방법에 따라”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u>탱크로리 위성기지 운영비</u></p> <p>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p>	<p>제4조(지원대상)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u>보조금 교부절차</u>에 따라 교부한다.</p>	<p>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 ----- ----- 「하동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 방법에 따라 --.</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71 호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89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
2. 취업상담·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
3. 건강관리, 원격의료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
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 재활서비스 제공

- 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 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 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
- 9. 재활목욕 등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
- 10. 그 밖에 군수가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각 호와 같다.

-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감염성 질환자
-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절기 중에는 09시부터 20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

을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한다. 다만,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운영비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제4조 2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p>각종 치료사업</p>	<p>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름</p>	<p>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준함</p>
<p>대 강 당</p>	<p>3시간 이내 : 20,000원 3시간 초과 5시간 이내 : 40,000원 1일 : 60,000원 ※ 주말 및 공휴일은 평일의 20% 가산</p>	
<p>기타시설</p>	<p>자체운영규정에 따른 실비</p>	

※ 냉·난방, 음향, 조명시설 사용 포함임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1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72 호

###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동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

3.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50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82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3.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080-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82	2018 0330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흥천면 남산리 429-2, 431-5	경상남도 하동군 흥천면 경서대로 851	2018 0330	2009 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49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674-3	2018 0330	2009 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항리 489-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678	2018 0330	2009 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241-2, 241-7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1-11	2018 0330	2007 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895-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331-63	2018 0330	2007 0618	악양면 등촌리에서 청암면 목계리로 넘어가는 회남재라는 고개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산92-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87-3	2018 0330	2009 0702	행정구역명(고이리+원동마을)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508-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54	2018 0330	2007 0618	대밭이질어 대밭땀이라고 불리워져 대밭땀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59-5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동촌몰랑길 33-12	2018 0330	2008 0402	동촌이라는 자연마을명에 고유지명을 합성하여 동촌몰랑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738-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107	2018 0330	2008 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608-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길 64-12	2018 0330	2007 0618	안심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 93-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2길 9-6	2018 0330	2009 0302	자연마을 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113, 302-363, 302-513, 302-51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시장길 17-13	2018 0330	2007 0618	새로생긴길이고시장과인접하기때문에 진교시장길로 명명

302-516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830-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4	2018 0330	2007 0618	두전 서쪽에 있는 한옥정이라는 지명이 를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738-2, 744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구청길 65	2018 0330	2008 0402	구청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고 시

●산림청고시제2018-35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2018년 03월 23일

가. 산 립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 칭	위 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 목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하동판백 자 연 휴양림	합 계	2필지	300,000	3필지	307,950	1필지	△7,950		
	경남.하동.옥중.위태리	산279-1	223,610	산279-1	223,610			임야	하동군
		산279-9	76,390	산279-9	76,390			임야	하동군
				산281	7,950	산281	△7,950	임야	하동군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	NI 52-2-22-1 청암 3571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52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b>최 * 옥</b>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장소

점용 : 경남 북천면 직전리 1476-10 인근 : 경남 북천면 직전리 111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182㎡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 · 사용의 유형

가설건축물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53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b>최 * 옥</b>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장소

점용 : 경남 북천면 직전리 1476-10 인근 : 경남 북천면 직전리 111-1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42㎡

(또는

㎡)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18. 3. ~ 2023. 3.)

점용 · 사용의 유형

가설건축물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54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하동군수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b>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b>	

장소

점용 :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198-7,765-4,195-3 인근 : 진교면 백련리 183-1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268㎡

(또는

㎡)

목적

사기마을 농로 정비공사

기간

**영 구**

점용 · 사용의 유형

콘크리트 포장 A=229.3㎡, BOX교 (7.0×2.9×1련)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57 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b>공 * 표</b>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장소

점용 : 경남 옥종면 북방리 산 29-1인근 : 경남 옥종면 불무안길 13-7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78.0㎡

(또는

㎡)

목적

주차장용지 및 진입도로 이용

기간

2018. 3. ~ 2023. 3.)

점용 · 사용의 유형

주차장용지 및 진입도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4월 10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공고 제 호

##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 개정으로 매점규모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잘못 적용된 관련 법 조항을 정정
3. 주요 내용 :
  - 관련 법 조항 정정 : 제1조, 제2조 관련
    - 관련법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제25조(생업지원)
  - 조례일부 삭제 : 제3조(적용범위) 관련
    - 단서로 규정하고 있는 매점의 제한규모(15m<sup>2</sup> 이하인 시설)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880-2343, FAX 880-2349, e-mail :

sinssof@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붙임 1.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끝.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노인복지법」 제26조 ” 를 “ 「노인복지법」 제25조 ”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노인복지법」 제26조 ” 를 “ 「노인복지법」 제25조 ” 로 한  
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  
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생 략)

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관  
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  
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  
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장  
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  
라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  
-----  
-----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  
-----  
-----  
-----

----- . <단서 삭제>

하동군 공고 제 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내용 일부를 정비
3. 주요 내용 :
  - 조례일부 삭제 :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관련
    - 조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환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880-2343, FAX 880-2349, e-mail : sinssof@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붙임 1.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끝.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② (생 략)</p> <p>③ <u>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 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하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4월 2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하동군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경제수산물, 전화 055-880-2192, FAX 055-880-2199, sonss67@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동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 2.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 4.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 5.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수산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청년 당사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이 된다.

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경상남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8- 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 월 4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 정비
  - 운동의 연속성과 시설이용 증대를 위한 정기휴관일 변경
3. 주요 내용
  - 조례 일부 삭제 : 제3조 2호
    - 부대시설 중 “매점” 삭제
  - 휴관일 변경 : 제4조 3항 1호
    - 정기휴관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 사용료 감면사항 정정 : 제9조, 별표 2
    -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100분의 80으로 감면률 조정
  - 손해배상 책임 분배 : 제13조 3항
    - 체육시설 이용시 발생된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르도록 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체육시설사업소, 전화 055-880-6442, FAX 055-880-2069, e-mail cool195@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 을 “매표소, 관리사무실” 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화요일” 을 “일요일”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체하는 행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를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80%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80%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1년 동안 감경)	50%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50%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0% 또는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b>[별표1]</b> 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운영 시설) 하동군 국민체육 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p> <p>1. (생략)</p> <p>2. 부대시설 : <u>매표소, 매점, 관리사무실</u> 등</p>	<p>제3조(운영 시설)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매표소, 관리사무실</u> -----</p>
<p>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② (생략)</p> <p>③ 국민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 매 주 <u>화요일</u></p> <p>2. (생략)</p>	<p>제4조 (시설개방 및 휴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u>일요일</u></p> <p>2. (현행과 같음)</p>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다만, 감면을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하며,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u></p> <p>2. (생략)</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3조(손해배상) ① (생략)</p>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u>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체하는 행사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u> ----- -----.</p> <p>&lt;삭제&gt;</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② 이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② -----  
-----  
-----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전액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전액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전액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또는 가족(유공자1명당 1명)의 경우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하동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1년 동안 감경)	50%	
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50%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의 대상별 이용료 기준
기간회원이 3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이상 동시 등록시	20%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국민체육센터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현행과 같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80%	
하동군 방문 전지훈련 팀	80%	
하동군 체육회 가맹단체 및 하동군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정기대회	8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0% 또는 5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411호

#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 제38조에 의한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제1조 ~ 제2조)
  - 제2장 읍부즈만 기능 · 구성 등(제3조 ~ 제14조)
  - 제3장 사무기구 및 운영 등(제15조 ~ 제17조)
-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고충민원 신청, 접수, 이첩(제2조, 제3조, 제4조)
- 고충민원 조사, 조사방법(제5조, 제6조)
- 고충민원 신청서 보완(제7조)
- 고충민원 각하, 취하,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제8조, 제9조, 제10조)
- 합의 권고, 시정 권고, 제도개선 권고(제11조, 제12조, 제13조)
- 처리결과 통보 등(제15조)
-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제18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하동군(기획조정실, 전화 055-880-2035, FAX 055-880-2019, 이메일 dove1564@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ombudsman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하동군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ombudsman”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ombudsman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ombudsman 기능 · 구성 등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및 하동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군수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 읍부즈만) ① 대표 읍부즈만과 부대표 읍부즈만은 읍부즈만 중 에서 호선하며, 대표 읍부즈만은 읍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 읍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대표 읍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읍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읍부즈만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읍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관할) 읍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등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군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읍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읍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 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읍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ombudsman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ombudsman의 제척·기피·회피) ①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ombudsman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ombudsman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ombudsman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ombudsman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ombudsman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ombudsman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ombudsman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ombudsman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의회 동의) 군수는 ombudsman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

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사무기구 및 운영 등

제15조(사무기구) ① 군수는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16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읍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읍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ombudsman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ombudsman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ombudsman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나 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② ombudsman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ombudsman과 타 기관의 ombudsman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소속기

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  
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  
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  
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  
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  
을 경우(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 1.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4. 감정의 의뢰

② 읍부즈만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읍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의 보완) ① 읍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읍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6. 그 밖에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ombudsman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ombudsman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합의의 권고) ombudsman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ombudsman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하동군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ombudsman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7조에 따른 ombudsman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ombudsman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ombudsman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지연)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고충민원 조사통보 및 요구서
-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
- [별지 제7호서식] 고충민원 보완요구서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하동군 읍부즈만에 고충민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접수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하동군 읍부즈만에 고충민원 신청 자격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청구 일로부터 조사 종료일 및 조사 관련 문서 보존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접 수		민원제목	신청인			피신청인		처 리				기타사항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월일	처리방법	처리내용	담당 임부즈만		

[별지 제3호서식]

###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		민원제목		
접수일자				
신청인				
피신청인				
접수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읍부즈만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지연) 통지서

접수번호

신 청 인

「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처리기간을 연장(지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읍부즈만 (인)

제 목

내 용

연장일자

연장(지연)  
이 유

[별지 제5호서식]

<b>고충민원조사 통보 및 요구서</b>	
접수번호	
신 청 인	
<p><b>귀하</b></p> <p>「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함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읍부즈만 (인)</p>	
제 목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내용  설명·자료· 출석·의견 진술 등 요구사항	
소관부서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음부즈만

사 진

3cm ×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하 동 군

60mm × 90mm(PVC(비닐) 980.4g/m<sup>2</sup>)

(뒤 쪽)

제 호

### 신 분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하동군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동군  
음부즈만 입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직인

◎ 우리군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동군 음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증을 제시하면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b>고충민원신청서 보완 요구서</b>	
접수번호	
신 청 인	
<p style="text-align: center;"><b>귀하</b></p> <p>「하동군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신청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동군 읍부즈만 (인)</b></p>	
제 목	
보완제출 기간	
보완내용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고)

- ▶ 7급상당(수목보호전문가)
- ▶ 8급상당(학예연구사)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호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수목보호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2년	산림복지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수목보호 전문가	- 10리 벚꽃길 보호사업 총괄 - 기타 가로수 수목보호 관련 업무 수행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수목보호 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상당)	1.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수목보호기술사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사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수목 보호 (3년이상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7급	58,936천 원	41,859천 원	7급(상당)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6.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3. 23(금)	'18. 3. 23 ~ '18. 4. 7	서류전형	-	'18. 4. 10.
		면접시험	'18. 4. 12.	'18. 4. 13.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03. 23 ~ 04. 07/ 15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8. 제출 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산림녹지과(☎ 055-880-2492)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호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1명	2년	농업소득과 녹차산업담당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하동야생차박물관 학예연구	-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 - 소장유물 보관 관리 및 DB구축 -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하동야생차 박물관 학예연구	(일반임기제 8급상당)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b>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b>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ol>

##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8급	51,705천원	36,882천원	8급(상당)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6.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3. 23(금)	'18. 3. 23 ~ '18. 4. 7	서류전형	-	'18. 4. 10.
		면접시험	'18. 4. 12.	'18. 4. 13.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03. 23 ~ 04. 07/ 15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8. 제출 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농업소득과(☎ 055-880-2832)

< 붙임 1 >

# 응 시 원 서

본인은 하동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⑫]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 )급상당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b>응 시 표</b> (일반임기제채용시험)			사 진 ⑫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일반임기제 ( )급상당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2018년 월 일 하동군수 ⑫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뒷 면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붙임 2 >

이 력 서

가.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	--	-----	--

.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붙임 5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방호직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8. . .

작성자    성명 : ○ ○ ○ (서명)

< 붙임 6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하동군 시행 2018년도 하동군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하동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탁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 하 동 군 수

#### 1. 위탁대상 시설

- 가. 시설명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 나. 위치 :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89
- 다. 시설규모 : 건축면적 1,792㎡(연면적 5,618㎡)
- 라. 주요시설

구분	층별	면적	주요시설
합계		5,618.21㎡	
본관	1층	885.86㎡	안내/접수, 카페테리아, 보호/공동작업장, 상담실, 가족탕(3), 수중치료실, 목욕탕
	2층	1,539.82㎡	부모대기실, 물리치료실(2), 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사회교육실, 방과후교실, 언어치료실(2), 오감체험실, 건강교실, 소교육실, 식당, 주방

구분	층별	면적	주요시설
본관	3층	1,395.47㎡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관장실, 통합사무실, 문서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주간보호센터, 원격의료지원실, 세탁실, 온돌휴게실, 취미교실, 정보화교실
	4층	1.262.79㎡	대강당, 다목적휴게실, 당구장, 체력단련실, 시각장애인전용탁구장, 노래연습실

2. 위탁기간 : 5년

3. 위탁의 범위

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무

나.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4. 신청자격 ※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나.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다. 수탁법인 모집공고 시 제시한 위탁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

라. 수탁기간 중 매년 자체부담액(법인전입금)을 최소 3천만원 이상 부담 가능한 법인

마.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최근 3년 이상 있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예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마.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제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 바.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 아. 기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
-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수탁운영조건

- 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나. 위탁심사 사업 설명시 약정한 자부담금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약정금을 출연하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
- 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통합 운영하며 팀(과)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종사자는 관장 포함 25명으로 운영. 세부사항은 하동군과 협의
- 라. 수탁자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
- 마.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 단, 실비이용료는 수탁자 수입으로 하되,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 충당 및 당해 시설 이용자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함
- 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03. 23. ~ 04. 13.(22일간, 공휴일 포함)

나. 접수기간 : 2018. 04. 11. ~ 04. 13.(3일간)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접수장소 : 하동군 주민행복과(☎055-880-2212, 2215)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등 불가)

9. 심사일정 및 방법

가. 심사일시 : 2018. 04. 18.(수) 14:00

나. 심사장소 : 하동군청 소회의실(2층)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내용 : 서류 및 사업내용 심사

라. 심사항목 : 수탁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장 예정자 사업수행능력, 운영에 대한 의지 및 준비

마. 사업설명 : 발표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바. 발 표 자 : 법인 임직원 또는 시설장 내정자가 하여야함

※ 불참 시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서

10. 선정 및 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선정기준 :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 1) 심사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상대상 1순위이며, 결정통지를 무효화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진행

2)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다. 결과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단독 응모한 경우에는 적격여부(평균 60점이상)를 판단 수탁자 선정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 “0” 점 처리

11. 위·수탁협약 체결

가. 시 기 : 수탁법인 선정결과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장 소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장애인복지담당)

다. 공 증 : 법무법인에 의뢰, 위·수탁협약서 공증절차 이행

12.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신청서 - [붙임 1]

나. 각서 - [붙임 2]

다.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붙임 3]

라. 위탁심의자료 - [붙임 4]

마. 사업운영계획서 - [붙임 5]

바. 증빙서류 - [붙임 6]

1) 제출서류는 가~바 항 순서에 따라 A4 좌절 편철하여 13부(원본 1, 사본 12) 책자로 제출(신청서 접수시 제출), 제본시 반드시 세부 목차 및 각 하단에 페이지 표기

2) 사업설명 발표 요약자료(10분 내외)는 A4 좌절 제본하여 13부 제출하고 별도로 전산파일 제출(USB 또는 이메일)하여야 함  
- 발표일 3일전까지 제출

3)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단, 예금통장 잔고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



## 13. 기타사항

- 가.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약 체결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함.
- 라.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수탁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름)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055-880-2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의 해석은 하동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

【붙임 1】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수입재산 및 연 수입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위탁운영기간		20 . . . ~ 20 . . .			
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					
<p>「하동군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수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p> <p>하동군수 귀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p>					

## ○○○○법인 ○○○○ 일반현황

### □ 기본현황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유형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input type="radio"/> 근거 <input type="radio"/> 목적사업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법인시설	<input type="radio"/> 직영시설 :        개소 - 시설명 : <input type="radio"/> 수탁시설 :        개소 - 시설명 :			

※ 모든 첨부서류는 각 항에 페이지 기재할 것

【붙임 2】

각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상기 법인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한 하동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하동군과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 3】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은(는)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하동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당초 약정한 법인 전입금 약정액을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복지관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정 부담액외에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부 담 액	지원시기	비 고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하 동 군 수 귀하

- ※ 첨부: 1.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증빙서류:           page)  
 2. 법인대표 인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page)

# I 수탁자의 적격성

## 1.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가. 법인 유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

다. 이사회 의결 내용(사회복지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내용)

일자	장소	참석인원	의결내용

증빙서류	page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이사회 의결서 사본
------	------	-----------------------------------

## 2. 법인의 재산현황 (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명의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	순 자 산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 기본재산 범위 : ① 부동산
- ② 동산(예금)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한 것만 인정
- ※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법인이사회 구성

가. 법인임원 현황 :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연번	직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직업	주요경력	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b>증빙서류</b>	<b>page</b>	① 임원 이력서 및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② 자격 및 학위 전문 증빙(해당이상의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료증,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	---

나.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참석인원	회의안건	회의결과	사업 반영여부	이사 참석율
※ 정기 또는 수시(임시)로 구분		이사 명 감사 명				%

<b>증빙서류</b>	<b>page</b>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회의록 기명날인 확인 요망) 법인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이사회 회의 결과를 사업 반영정도 확인
-------------	-------------	--

4. 법인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구분	명칭	신청기관	사업내용	사업기간	수탁실적 (천원)

<b>증빙서류</b>	<b>page</b>	공모사업 수탁실적 증빙자료
-------------	-------------	----------------

5. 법인의 후원금 모금 실적(최근 3년간)

년 도	모 금 액	사 용 처			
		계	종 사 자 복 리 후 생	시 설 이 용 자 복 지 후 생	기 타
계					

증빙서류	page	후원금 모금실적 증빙자료
------	------	---------------

## II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1-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분야 자율적으로 기술

### 1-2 법인의 운영의지

※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열의도 및 하동군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도록 기술  
 ※ 법인대표 또는 관장 내정자의 수탁시설 운영의지 관련 소견서 첨부

## 2. 시설장의 전문성

가.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

1) 관장(내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자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최종학력 (학과명)	공개채용 여부



증빙서류	page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	------	--------------

2) 관장(내정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기재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등급	시행기관

증빙서류	page	소지 자격증 사본
------	------	-----------

나.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설장 자격요건(사회복지사 자격 등급) 및 공개모집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채용계획 작성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증빙서류	page	붙임5)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	------	-------------------

4. 최근 3년간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증빙서류	page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첨부
------	------	---------------

5.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이용인원 (정원/현원)	종사자수	비 고 (이용대상)

6.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작성(안)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가. 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

- 조직 및 인력구성의 방향

-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나. 종사자 채용 및 전문인력 확보

- 직원확보계획

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방안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계획

라.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운용

- 내부 슈퍼비전 체계

- 외부 슈퍼비전 체계

마. 종사자 복리향상 방안

바. 업무 환경 개선 방안

- 개선목표

- 실행방안 및 수행체계

7.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용예정 여부

법인명	시설명	시스템 사 용	시스템 사용예정

### III 재정능력

#### 1. 최근 법인 재무제표

증빙서류	page	법인의 재무제표서(결산서, 예산서 등) 제출 - 부채, 차입현황, 법인전입금 내역 포함
------	------	---

#### 2.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가. 법인의 재정 안전성

##### 1)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C)	자 산			부 채(C)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기본재산 범위 : ① 부동산 ② 동산(예금)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한 것만 인정

※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천원

#####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	---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 표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b>증빙서류</b>	<b>page</b>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공증증서로 첨부
-------------	-------------	--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천 원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천원)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임대계약서 사본 등
-------------	-------------	---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천원)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증빙서류	page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공증증서로 첨부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종 류	주요내용	금액(천원)

다) 보통재산 : 천원

종 목	주요내용	금액(천원)

라) 부채현황 :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계		

증빙서류	page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	------	--------------

2) 향후 5년간 수탁법인의 재정투자(부담)계획

※ 아래 서식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

연도별	법인전입금 약 정 액	법인전입금 투자(부담) 계획								재정운영 총액 대비 법인부담율
		계		사무비(인건비등 )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 향후 수탁법인의 재정투자(부담)계획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계		
예) 예탁금 은행이자		

4) 법인의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 자율적으로 작성

3.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가. 향후 3년간 수탁법인의 재정운영 계획(2017~2019)

※ 아래 서식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

연도별	재 정 운 영 액							
	계		사무비(인건비등 )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 산	비율	예 산	비율	예 산	비율	예 산	비율
계								
2017								
2018								
2019								

나. 법인의 재정확충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가. 법인의 예산관리

연도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이행현황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예산 총계주의	예산 편성 및 결정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장부 인정)
	세입세출 출납사무 다음연도 2월말 완결	법인회계, 법인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분리	법인 보유재산의 명의 (차량, 통장 등)	세입·세출 예산 계상여부	이사회 의결	관할관청 보고 (개시 5일 前)	
2015							
2016							
2017							

#### 나. 법인의 예산규모

#####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기본재산 수 입	수익사업 수 입	보 조 금 입 수	후 원 금 입 수	차입금	전입금	기타 (과년도수입, 이월금, 접수입)
계								
2015								
2016								
2017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단, 2016년은 공고일 전일 기준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 2) 세출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부채상환금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계							
2014							
2015							
2016							



-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단, 2016년은 공고일 전일 기준
-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증빙서류	page	법인회계 예·결산서(2015년~17년)
------	------	-----------------------

다. 법인의 회계집행 적절성(2015 ~ 2017년 공고일 전일 기준)

1) 법인 대상 회계감사 운영 실태

일 자	구 분	방 법	감 사 자(직함)	지적내용	처분결과	이행사항

-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법인 외부 회계감사 등을 기재

증빙서류	page	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	------	-----------------

2)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감사(지도·감독)

년 도	일 시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결과	이행사항
2015					
2016					
2017					

**IV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 4. 지역사회 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 가. 법인 주된 사무소 현황

소재지	규모(m <sup>2</sup> )	운영형태	상근직원명단 (담당업무)	허가사항	비고
	m <sup>2</sup> (지하 /지상 )				해당없음 (별도설치)

증빙서류	page	법인 주된 사무소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	-------------------------------------

### 나. 법인의 조직 및 인원

#### 1) 법인 조직도

2) 직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특수관계 여부

<b>증빙서류</b>	<b>page</b>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	---

【붙임 5】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 목차 및 페이지 작성

○○○법인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향후 운영계획

## 1. 종합복지관 향후 운영 계획서

- 가. 향후 시설 운영의 비전
- 나. 향후 지역사회내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방안
- 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라. 지역의 당면문제 및 주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마. 향후 3개년 중점 추진사항
- 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 사.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
- 아. 자원봉사자 현재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사본 첨부

## 2. 향후 세부 사업계획서

- 작성요령 (2018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 각종 예산의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 이용자의 편의증진 방안
    - 장애인 소득증대 및 취업알선 방안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 ※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첨부

### 3. 운영에 따른 예산 계획서

○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체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체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0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체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체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채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채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3년 6월분까지 작성

4.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확보계획 : (직원 확보계획/자격증 내역)

계	시 설 장	사무국장	1~3급	4~5급	기능·고용직
/	/	/	/	/	/

5.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

가. 연간운영비 예상액 : 천원

나. 운영비 자체 부담계획

(단위 : 천원)

계	보 조 금	자 채 부 담 내 역				비 고
		소 계	법인전입금	후 원 금	기 타	

※ 보조금 : 국비 및 지방비 포함.



6. 시설장 예정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등록기준지)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가. 근무경력

구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락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계		년 월		
장애인복지시설	소 계				
사회복지시설	소 계				
노인복지시설	소 계				
아동복지시설	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소 계				
기타복지시설	소 계				

나. 자격취득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비고

【붙임 6】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신청서**  
**증빙서류**

1.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증빙 -----

○○

2. 법인임원현황 증빙 -----

○○

3.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

○○

4. 법인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 ○

○

5. 법인의 후원금 모금실적(최근 3년간) ----- ○

○

6. 관장의 인적사항

----- ○○

7. 관장의 자격증 취득현황

----- ○○

8.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

9. 최근 3년간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 ○○

10. 최근 법인 재무제표

----- ○○

1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12. 수익용 기본재산

----- ○○  
13. 부채현황

----- ○○  
14. 법인의 예산규모

----- ○○  
15. 법인대상 회계감사 운영실태

----- ○○  
16. 법인 주된 사무소 현황

----- ○○  
17. 법인 직원 현황

----- ○○

##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이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

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하동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18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동군(주민복지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Ⅲ.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및 이용 목적

가) 제공항목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이용목적

-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서 작성대상 : 시설장애정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12.7.27>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하동군장애인복지관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하동경찰관서장 귀하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동의서 작성대상 : 시설장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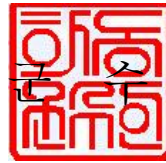
하동군 공고 제 2018-377호

##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8. 3. 28.

하 동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태풍·호우주의보 등이 발효되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으며, 재해 미발생으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의 피해 및 복구사항은 없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과 5개 담당 19명으로, 정원 및 현원이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10종으로 51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지난 4년 평균보다 49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8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방재담당공무원이 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자율방재단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160백만원이나 860백만원 확보되어 537.5%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352백만원 보다 508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30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388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09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29백만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10등급으로 위험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감소하였습니다.
  -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공공시설물(공공청사) 17개소 중 8개소가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47%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는 1건의 건축물(하동군청별관 구홍수통제소)에 대하여 건물 구조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14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평가결과 C등급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군·구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 예방 조치실적, 재난관리기금 적립실적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내진보강 등은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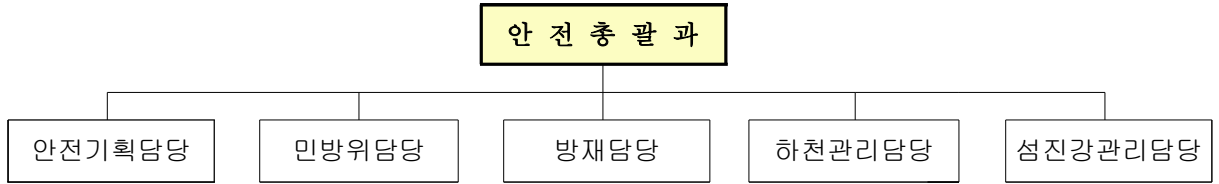
###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해	당	없	음	

※ 작성대상 : 복구계획서 수립 또는 재난의 발생에 따른 수습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 재난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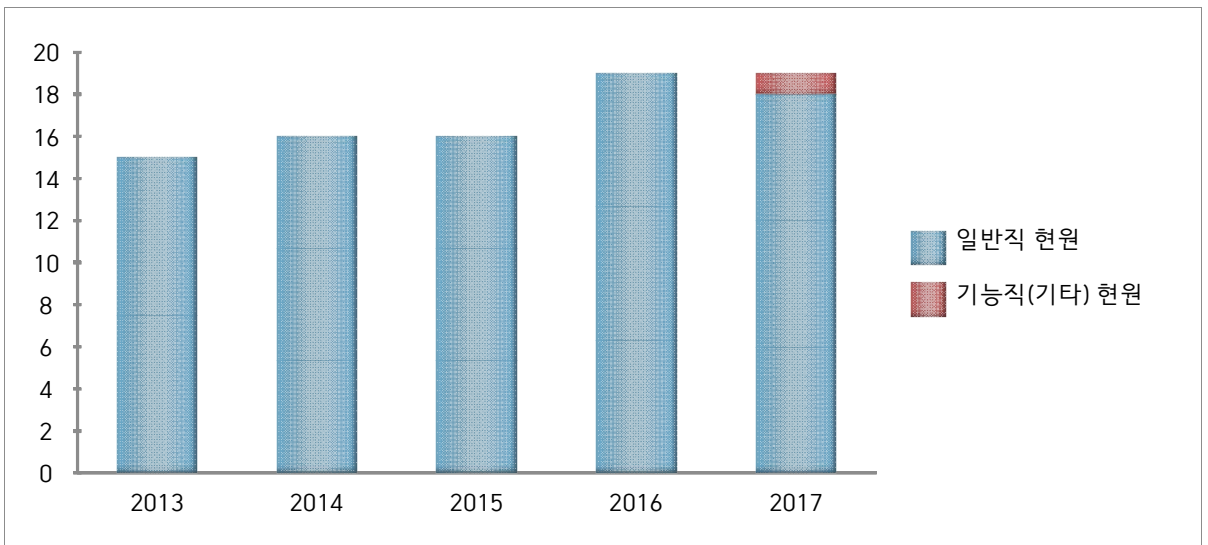
###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농촌 지도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9	19	-	1	5	5	3	5	-	-
	현원	19	18	-	1	5	7	1	4	-	1

※ 작성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직 현원	15	16	16	19	18
기능직(기타) 현원					1



- 일반직 현원이 1명 감소하였으나 기능직(기타) 현원이 1명 증가하여 전년대비 현원 변동 없음

###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계	5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56	하동군 전역
자동우량경보시설	59	화개, 청암, 옥종 하천지역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13	읍·면사무소 옥상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	대석교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0	하동군 전역
재해문자전광판	11	화개장터 외 10개소
농어촌재난경보방송	13	금남면사무소 옥상 외 12개소
기상전광판	3	하동초등학교 외 2개소
위성전화기	6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적설량계	4	지리산역사관 외 3개소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450	458	463	498	5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60	360	360	360	356
자동우량경보시설	58	59	59	59	59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9	11	13	13	13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1	1	1	1	1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6	6	6	29	50
재해문자전광판	10	10	10	10	11
농어촌재난경보방송			6	13	13
기상전광판		5	2	3	3
위성전화기	6	6	6	6	6
영상적설량계				4	4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장비 교체·정비 및 신규장비를 설치하는 등 재난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풍수해보험실무과정	2.1.~2.2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자연재난피해복구비지원 실무과정	2.1.~2.28.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동원자원조사교육	2.6.	국민안전처	6	
재난관리총론과정	2.16.~3.15. 9.16.~10.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2	
민방위실무과정	3.20.~3.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 고도화 교육	4.4.	국가민방위재난안 전교육원	3	
2차 특수재난종사자교육 (산업단지 대형화재·폭발)	4.27.	국민안전처	17	
지진대비 권역별 순회교육	5.30.	국민안전처	3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7.25.~8.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관리실무과정	8.30.~9.1.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9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9.1.~12.31.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4	
재해구호일반과정	9.1.~9.30.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급경사지실무과정	9.16.~10.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전국 복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9.22.	행정안전부	7	
재난안전관리자과정	9.29.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2	
국가안보및비상대비과정	10.24.~10.27.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1	
안전문화교육과정	10.25.~10.27.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3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 정책설명 및 안전교육	11.17.	행정안전부	3	
저수지·댐 안전관리과정	12.6.~12.7.	국가민방위재난안 전교육원	1	
드론활용교육	12.1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2	
재난사례연구과정 교육	12.13.~12.15.	국가민방위재난안 전교육원	2	
사회재난관리실무과정	12.13.~12.15.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민관협력과정	12.20.~12.22.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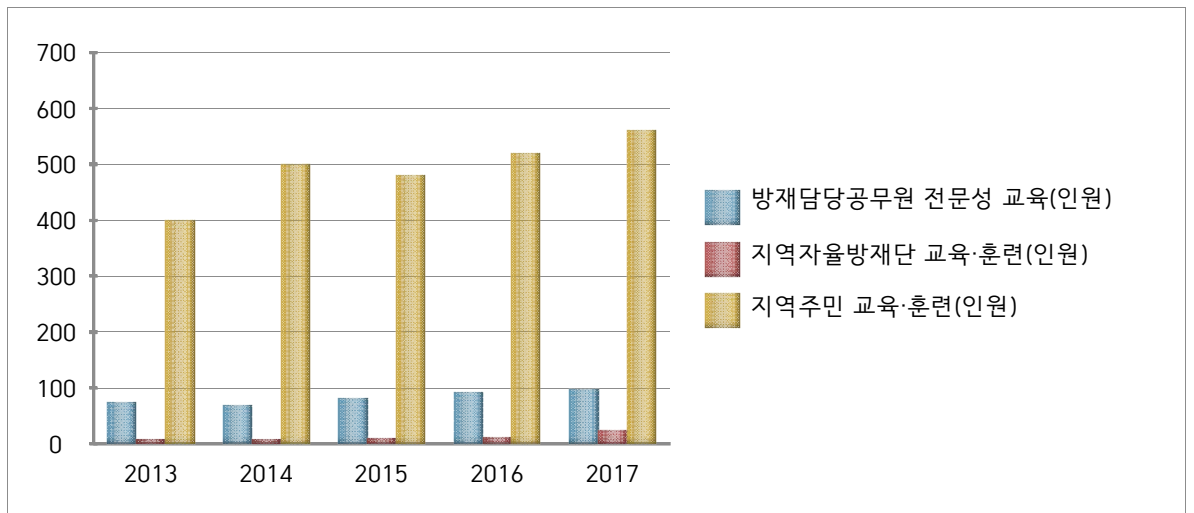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7.4.6. ~4.7.	창녕군 부곡하와이	2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국민안전처	
2017.6.28.	경남도청	6	상반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 교육	(사)전국재해 구호협회	
2017.11.3.	하동 발전본부	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관	하동군	
2017.11.15.	경남도청	6	하반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분야 교육	(사)전국재해 구호협회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7년 을지연습	8.21. ~8.24.	하동군 일원	300	피폭 및 화생방 테러에 따른 종합대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훈련	하동군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	11.1.	하동 군청	260	지진발생시 초기 대응 및 주민행동요령	하동군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74	69	81	92	97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8	8	10	12	24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400	500	480	520	560



- 방재담당공무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실시  
로 교육횟수 및 참석인원 증가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17.4.27.	군청 소회의실	42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및 역량강화교육	하동군	
17.9.12.	군청 소회의실 하동공설시장	42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자율방재단 간담회 및 안전캠페인	하동군	

◆ 제보 · 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42	38	38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따뜻하고 안전한 설명정 보내기 캠페인	1.25.	하동공설 시장	100	
2	2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마을이장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캠페인	2.22.	고전면사무소	50	
3	3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	3.17.	하동 경찰서 앞	100	
4	4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봄 농번기 안전사고 및 건조기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	4.27.	문화예술 회관	80	
5	5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영농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조기 산불예방 캠페인	5.19.	문화예술 회관	90	
6	6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수상레저, 물놀이 등 수상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6.29.	하동 체육관	90	
7	7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7.20.	송림공원	100	
8	알프스하동 섬진강재첩축제 캠페인	알프스하동 섬진강재첩축제 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7.21. ~ 7.23.	송림공원	120	
9	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안전신문고 앱 홍보	8.4.	횡천 및 청암 물놀이 지역	100	

10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캠페인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캠페인	8.7.	하동초등학교 앞	80	
11	9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석명절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9.27.	하동공설시장	90	
12	10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회남재 숲길걷기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10.28.	청암면 회남재	150	
13	11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 캠페인	11.17.	하동경찰서 앞	100	
14	12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마을이장과 함께하는 소방교육	12.15.	금성면사무소	60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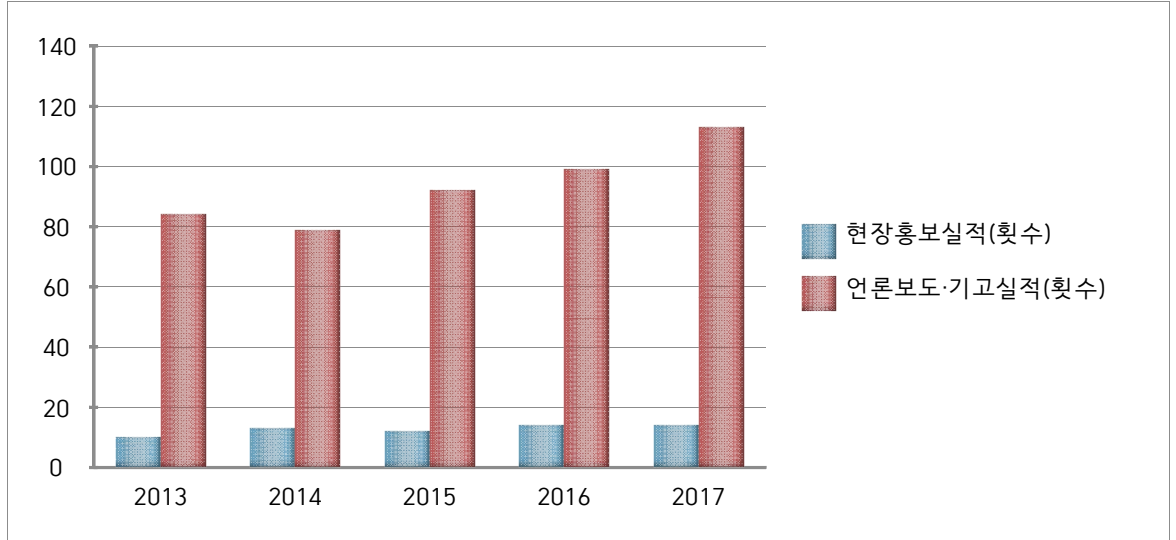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하동군 김제홍 부군수, 새해 현장행정 나서	주요 사업장과 민원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1.11.	일요서울 외 3	
2	하동군, 안전하고 따뜻한 설명절 종합대책 추진	교통, 민생, 안전, 의료 등 7개 분야 추진	1.18.	프레시안 외 4	
3	구제역으로부터 청정 하동 지킨다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2.8.	불교공뉴스 외 7	
4	하동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홍보 '민관 맞손'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유관기관·단체와 홍보 및 가입유도	2.12.	뉴스메이커 외 2	
5	안전도시 하동군 구축 유관기관 뭉쳤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	2.14.	환경일보 외 2	
6	하동군 안전위험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특정관리대상시설, 대형공사장, 해빙기 취약시설 등 민·관합동점검 실시	2.21.	환경일보 외 2	
7	하동군 새학기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합동점검	새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위해요인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	3.9.	경남일보 외 2	
8	하동군 새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캠페인	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	3.20.	경남도민신문	
9	하동군, 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대대적 정비	관내 전 보건지소와 진료소 대상 시설물과 의료장비 일제점검	3.20.	경남도민신문 외 5	

10	하동군, 드론(Drone) 예산절감 효자노릇 특특	각종재해·재난 현장 투입 등 드론 활용	4.6.	프레시안 외 12	
11	하동군, '안전 파수꾼' 안전모니터봉사단 간담회	안전모니터링 활용 의견 교환 및 발전방안 모색	4.27.	프레시안 외 1	
12	하동호 기름 유출 방제훈련 성공적 실시	민·관합동 하동호 수질오염사고 대응 가상 방제훈련 실시	5.17.	업코리아 외 4	
13	놀이·체험 결합된 안전체험관 운영 호응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5.18.	국제뉴스 외 2	
14	하동군 예비비 투입 농업용수공급 인건힘	가뭄 장기화에 따라 예비비 투입 등 대책마련	6.14.	경남일보 외 5	
15	하동군,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및 경로당 등 현장점검	7.14.	신아일보 외 3	
16	하동군, 휴가철 안전위험요소 신고 받습니다	여름 휴가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8.1.	불교공 뉴스	
17	하동군, 2017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	을지연습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9.8.	프레시안 외 5	
18	하동군 재난예방·대응 민관협력기구 공식 출범	하동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10.24.	뉴스타운 외 1	
19	하동군, 인명구조·재난수습 현장 훈련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30.	신아일보 외 4	
20	하동군-건설기계협의회 재능기부 맞손	재해·재난에 대한 응급복구 및 소외계층 지원	11.7.	일요서울 외 7	
21	하동군, 동절기 종합대책 본격 가동	각종 재해·재난예방,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4개 분야 추진	11.20.	일요서울 외 4	
22	'시 막아라' 하동군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닭·오리 사육농가 및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방역 강화	11.21.	환경일보 외 11	
23	하동군, 화재·자살 생활안전지수 개선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1~2등급 상승	12.18.	뉴스타운 외 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현장홍보실적(횟수)	10	13	12	14	14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84	79	92	99	113



- 매월 4일 전후 안전점검의 날을 기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로 홍보 및 언론보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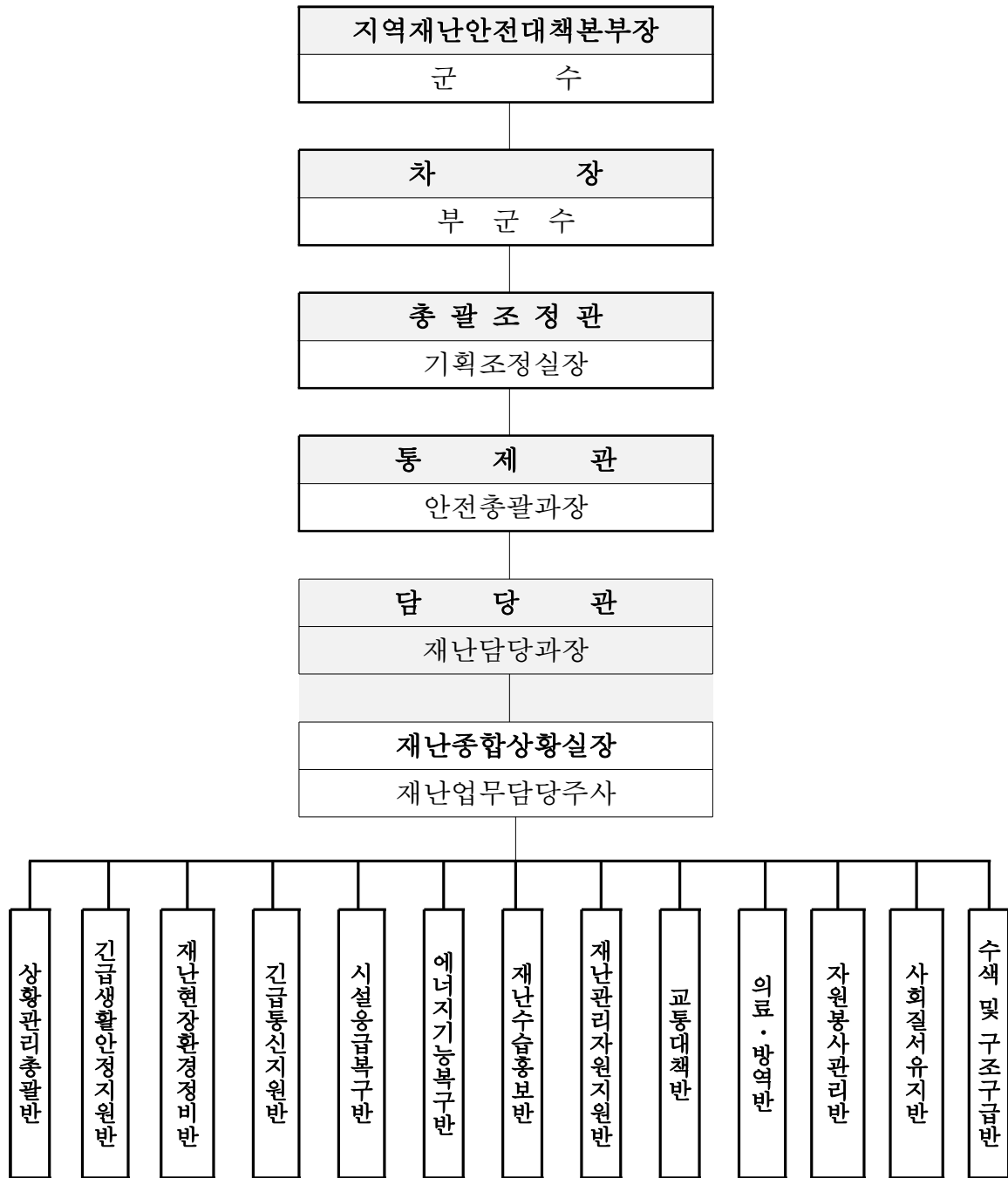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 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군수</li> <li>• 위원 : 12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군수</li> <li>• 위원 : 10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군수</li> <li>• 위원 : 13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총괄과 방재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 : 방재담당</li> <li>• 사회재난 : 안전기획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군수→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군수,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행복과)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보호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행정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해당실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경제수산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조정실)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건설교통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기획조정실)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하동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하동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재난정보수집분석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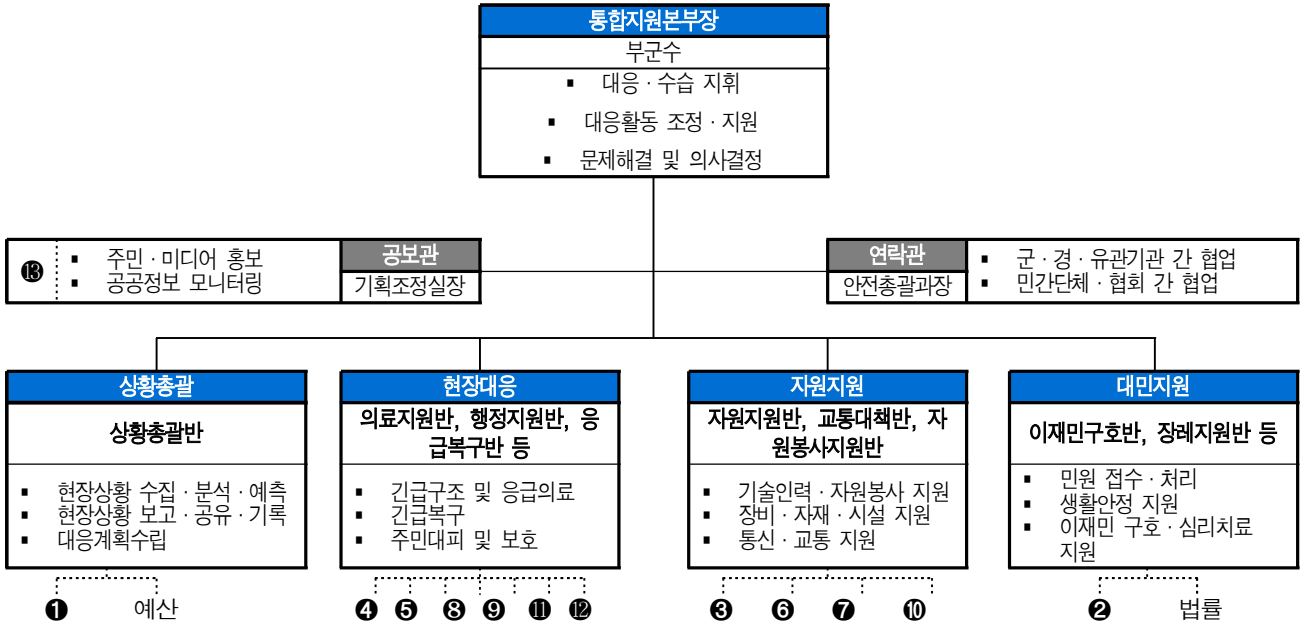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황 관 리 총 괄 반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총괄과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안전 총괄과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3.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	기획 조정실, 행정과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주민 행복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환경 보호과, 경제 수산과
긴급 통신지원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행정과 Kt하동지점
시설 응급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해당실과, 유관기관 단체
에너지 기능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경제 수산과, 한전하동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지사 외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시·군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기획 조정실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안전 총괄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	건설 교통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기획 조정실, 유관기관 단체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하동 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하동 소방서
유관기관, 단체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업무 지원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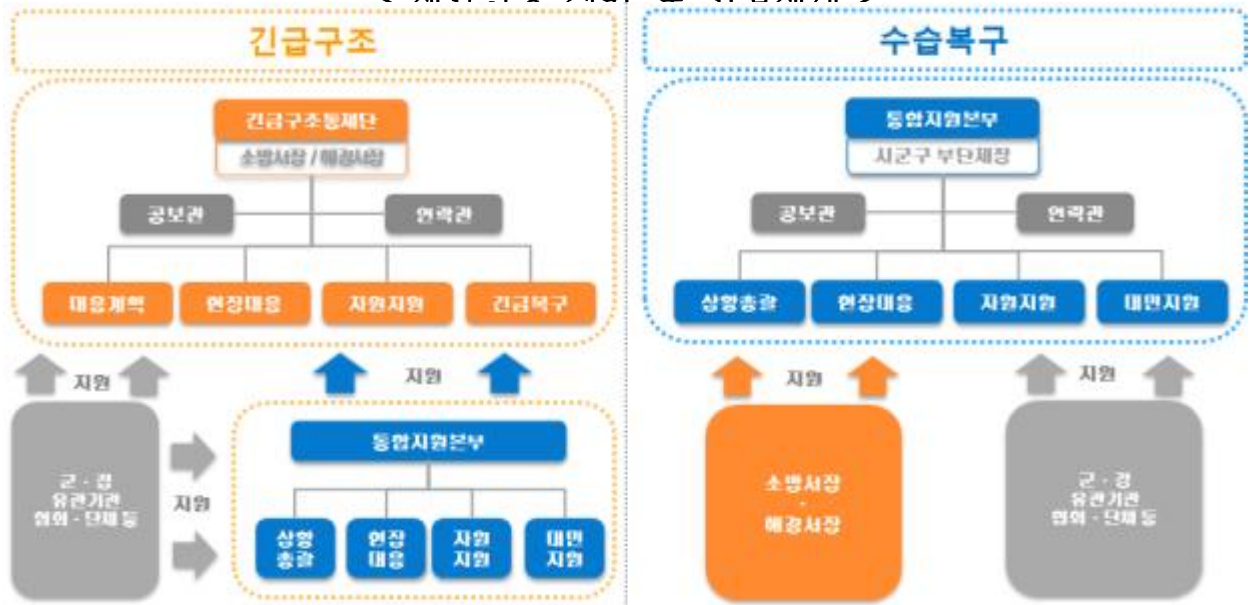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 |             |            |          |              |
|-------------|------------|----------|--------------|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 ③ 긴급통신지원 | ④ 시설응급복구     |
| ⑤ 에너지기능지원   | ⑥ 재난자원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⑩ 자원봉사관리   | ⑪ 사회질서유지 | ⑫ 수색·구조·구급   |
| 13 재난수습홍보   |            |          |              |

**< 재난협자 지회 민 협언체계 >**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 관	임무 및 역할	전화번호
하동경찰서	○ 폴리스라인 설치, 주민소개, 사고원인 조사 및 인명구조 및 병력투입	055-883-0182
하동소방서	○ 화재진화, 사고원인조사	055-880-9281
통영해양경찰서	○ 바다오염(대형사고 소화액등 바다유입)	055-647-2000
진주기상대	○ 기상통보 및 특보 발표	055-746-0132
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 사고현장 전력설비 긴급복구	055-880-5231
KT하동지사	○ 사고현장 통신 안전대책	055-882-0060
육군제8962부대5대대	○ 사고현장 불순분자 색출, 주변경계, 인명구조	055-884-0113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안전관리위원회의 및 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	2006.3.8.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2006.3.8.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 기금의 용도	2006.3.8.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 구축	2006.3.8.	
하동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 ○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 등	2006.3.8.	
하동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순위·범위 ○ 제방작업의 시기·방법	2006.3.8.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의견 제출	2006.6.22.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운영 ○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10.5.19.	
하동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진피해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 위험도평가·현장조치 등	2012.6.4.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안전시설·장비 확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2013.3.27.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2013.12.31.	
하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지원 ○ 안전의무 이행·감시망 구축	2015.12.15.	



하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2016.3.2.	
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2017.7.14.	
하동군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2018.2.1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총 계	시설물					건축물											
	소 계	교량	산도·케도	유원시설	소 계	다목적무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의료·장례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집회장	종교시설	수련시설	유동시설	공연시설
72	8	5	1	2	64	11	24	11	3	2	1	2	1	4	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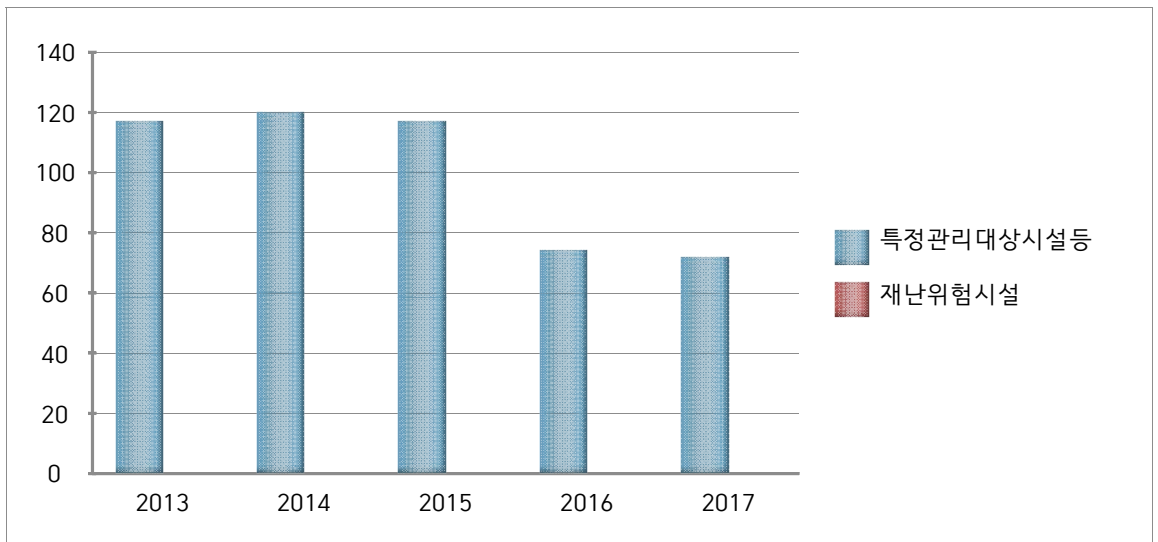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72	72	61	11	-	-	-	-	
시설물	8	8	3	5	-	-	-	-	
건축물	64	64	58	6	-	-	-	-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 **A등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이상이 없는 시설)
- ※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시설
- ※ **E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시설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정관리대상시설등	117	120	117	74	72
재난위험시설	-	-	-	-	-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 관리·지침 개정으로 대상시설물 감소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연도
	해	당	없	음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1~6.30	72	72	-	해당부서	-
하반기	7.1~11.30	72	72	-	해당부서	-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해	당	없	음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해 각 시설물별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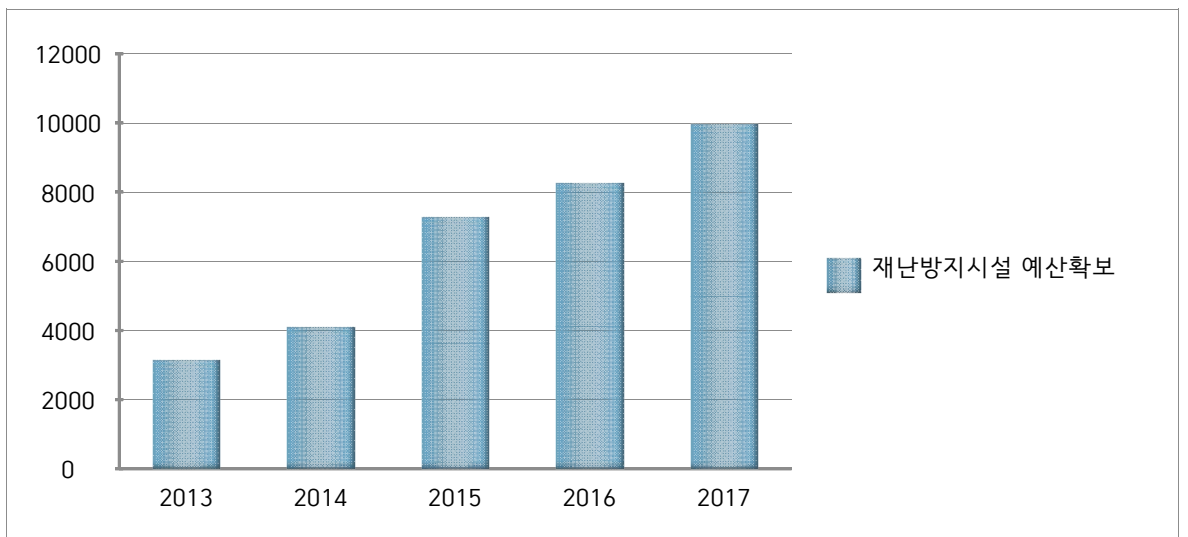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	하동군 관내	재해문자전광판, 재난감시CCTV 등 유지보수용역	17.1.~12.	179	재해예방
신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고전면 신월리 지내	사면정비 L=300m	17.2.6. ~18.1.10.	618	재해예방
직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북천면 직전리 지내	사면정비 L=100m	17.2.6. ~18.1.11.	670	재해예방
전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고전면 전도리 지내	실시설계, 사면정비 L=70m	17.2.2. ~17.12.31.	500	재해예방
재난위험감시 CCTV 설치사업	하동군 관내	재난위험감시 CCTV 설치 17개소	17.3.20. ~17.5.19.	242	재해예방

노량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금남면 노량리 일원	호안정비 L=570m, 선양장 1식	17.2.~18.3.	2,000	재해예방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 (1차 2017년)	하동읍 읍내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V=9,740m³, 부대공 1식	17.6.23. ~18.6.22.	5,752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3,154	4,086	7,250	8,247	9,961



-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재난방지시설 예산이 증가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물	유처리제
	km	천매	km	kl
총계	0.985	40	0.12	0.684

[의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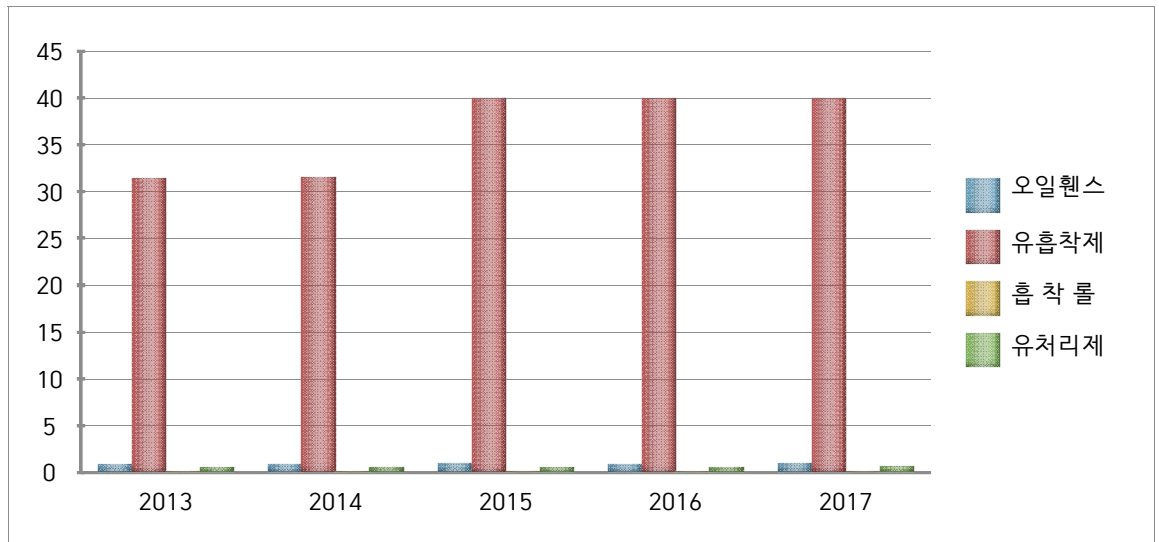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47	67	88	4	708	16
병 원	4	13	41	3	655	12
보건소	1	30	43	1		
기 타	42	24	4		53	4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65	13,992	24	10,955	35	1,377					6	1,66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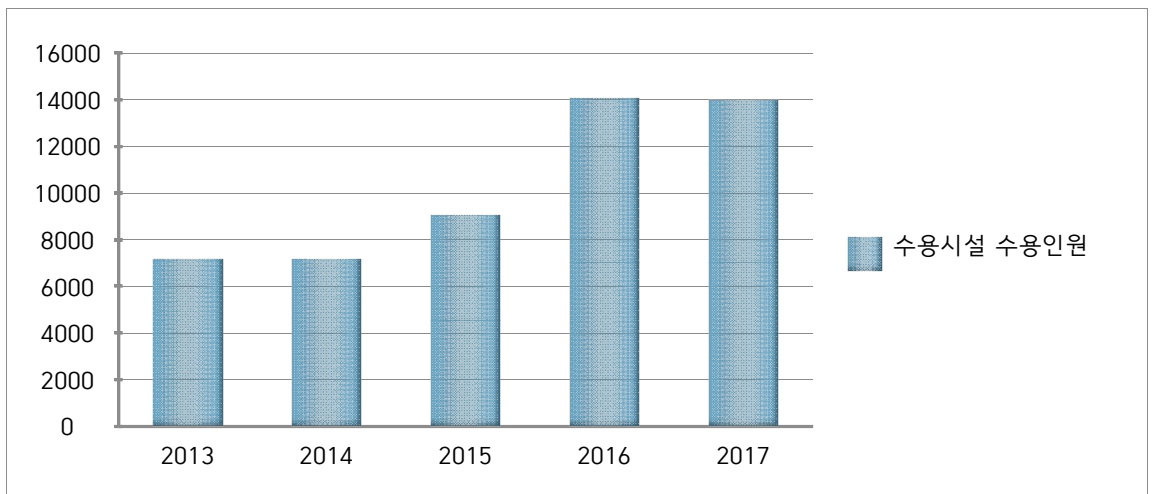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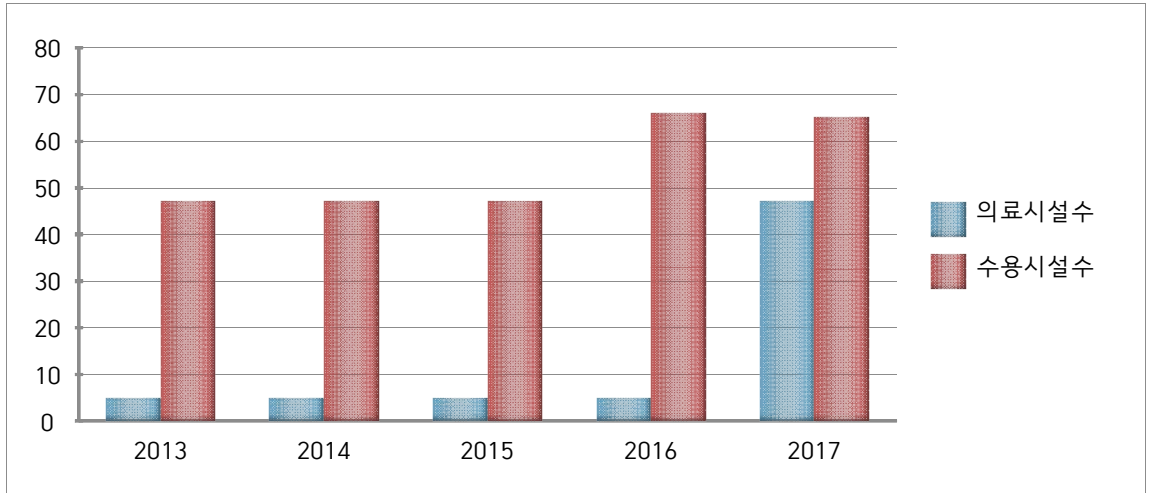
방재물자 종류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오일웬스	0.88	0.89	0.96	0.89	0.985
유흡착제	31.46	31.52	40	40	40
흡착롤	0.12	0.12	0.12	0.12	0.12
유처리제	0.576	0.566	0.534	0.566	0.684



- 방재물자는 소모품으로 기름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사용하고 부족분은 보충 구입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시설수		5	5	5	5	47
수용시설	개소	47	47	47	66	65
	수용인원	7,151	7,151	9,051	14,074	13,992



- 관내 병원 외에 의원까지 포함 작성하여 의료시설의 수 증가
- 2016년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수용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기존 47개소에서 6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 수용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임

####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 구조장비

구분	계	구명보트	구명환	구명동의	잠수세트	기타
총계	144	1	30	100	5	8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져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총계	95		28	6	12	11		14	24

◆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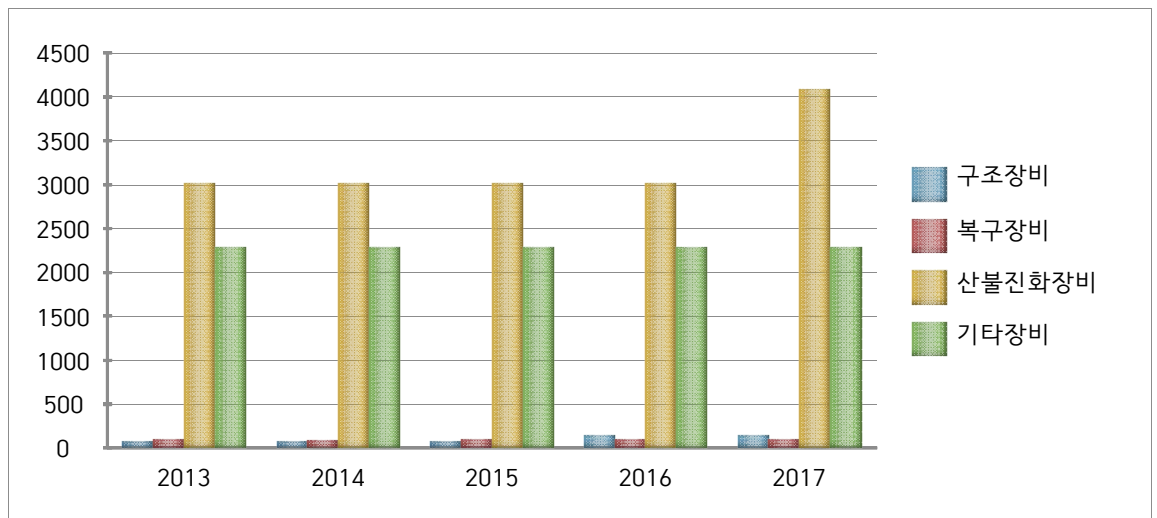
구분	계	헬기임차	등짐펌프	불갈퀴	진화장비세트	방제차량	기계톱	안전마스크	기타
총계	4,089	1	672	3,171	45	6	28	66	100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사	양수기	천공기	절단기	전기복구차량	기타
총계	2,281	13	7	2,236	14	6	2	3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조장비					
복구장비	74	74	74	144	144
산불진화장비	94	90	94	95	95
기타장비	3,011	3,011	3,011	3,011	4,089
기타장비	2,281	2,281	2,279	2,281	2,281



- 재해대비 및 활동용 장비에 대한 정비결과 수량에 변동이 있었음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20	1	2						17

◆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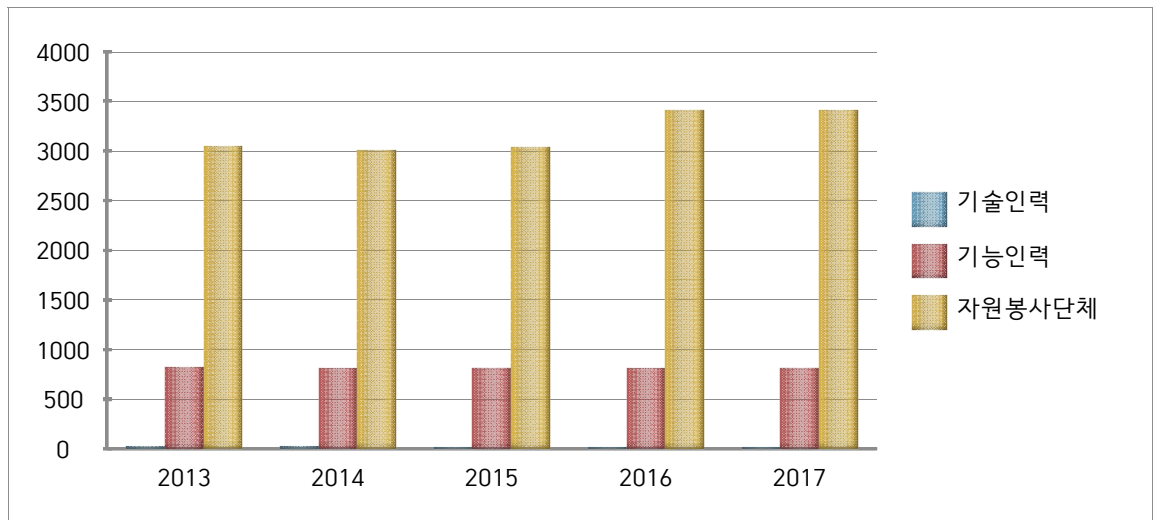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811	91	95	27			72		204	32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인원	3,407	647	31	14			320	319	35	35	2,006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술인력	23	23	20	20	20
기능인력	817	813	811	811	811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3,044	3,012	3,036	3,407	3,407



- 기술·기능인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의 수준은 큰 변동 없음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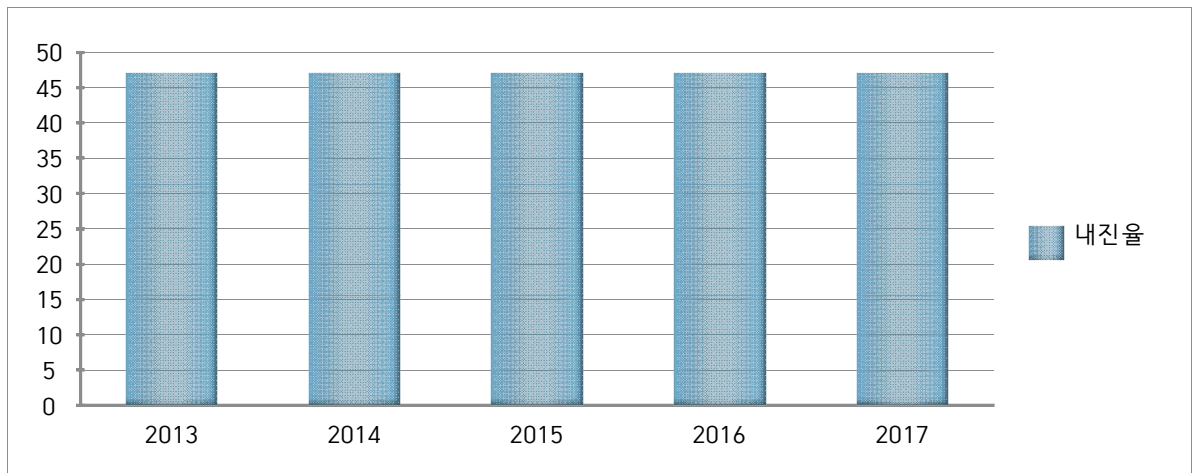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결과	비고
재난예·경보 시설 일제점검	3.27.~4.28.	경상남도	보통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1월~5월	국민안전처	보통	
2017년 하천정비 평가	5.29.~6.9. 11.27.~12.5.	경상남도	보통	
2017년 여름철 물놀이지역 안전점검	7.3.	경상남도	보통	
2017년 을지연습 평가	8.21.~8.24.	경상남도	우수	
2017년 재난대응안전한 국훈련 평가	10.23.~11.15.	행정안전부	보통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7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청사	17	8	-	-	47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내진율	47	47	47	47	47



- 대상 시설물 중 하동군청(별관가동구홍수통제소)에 대한 건물구조 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8. 14. ~ 10. 14.)하였고, 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내진보강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층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여	여	여	
종합상황실	여	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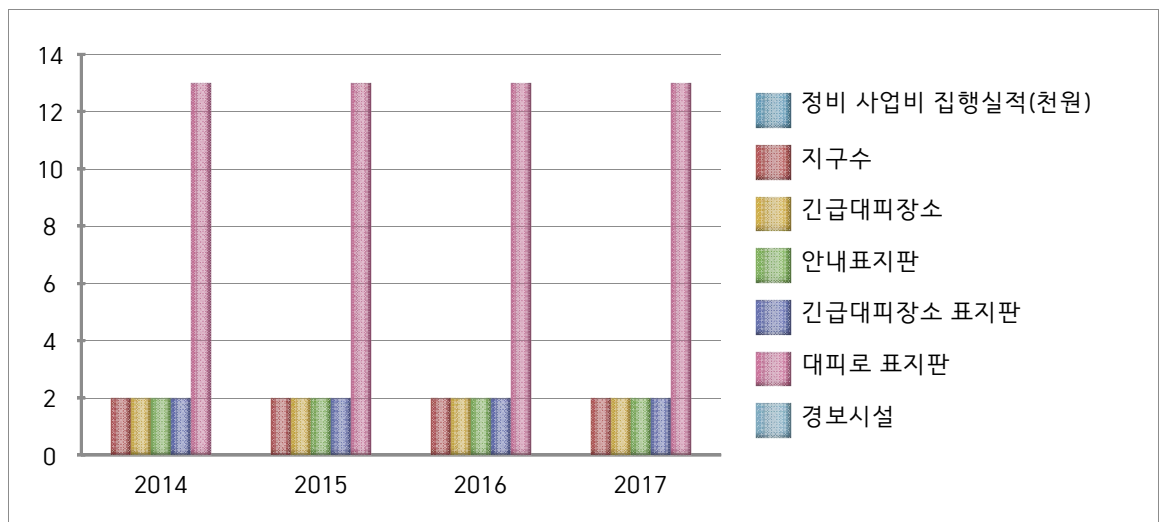
- 2010. 5. 하동군청 별관 준공(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확보)
- 2016. 4. 재난종합상황실 면진테이블 4EA 설치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갈사	1	8	1	1	6	
노량	1	9	1	1	7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지구수(개소)		2	2	2	2
긴급대피장소(개소)		2	2	2	2
표지판	안내표지판	2	2	2	2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2	2	2	2
	대피로 표지판	13	13	13	13
경보시설(개소)					



- 지진해일대비 주민대피계획 신규지정 및 변동은 없음

- 지진 관련, 지진옥외대피소는 17개소 지정되어 있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60백만원	160백만원	860백만원	537.5%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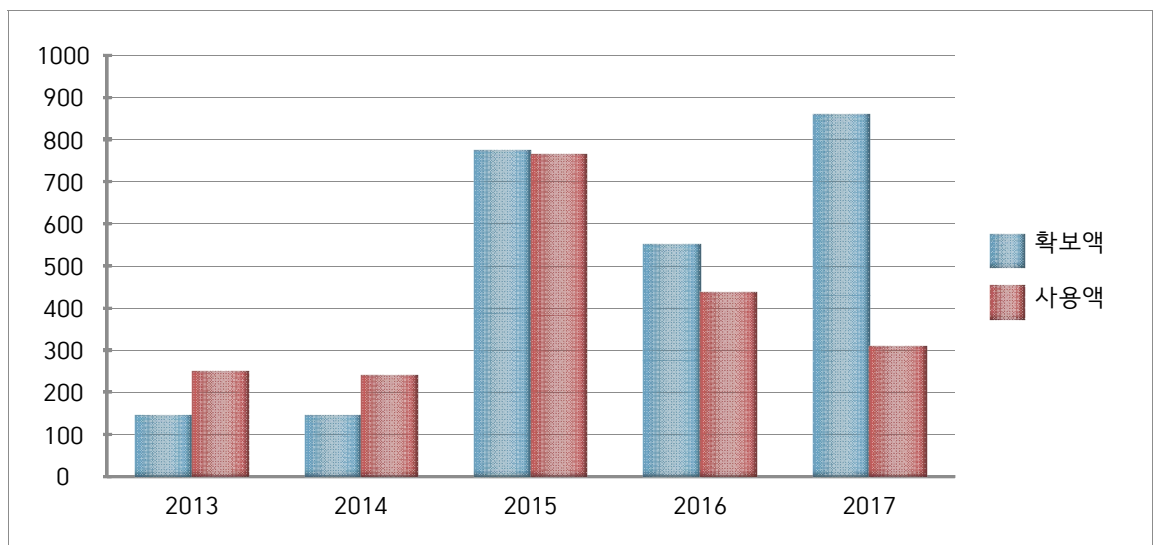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확보액	145	146	775	551	860
사용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250	240	764	438	309



-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기준 대비 많은 금액을 확보(확보율 537.5%)하고 있으며, 각종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을 위해 사용하

고 있음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자연재난 총괄 재난대응 조치체계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가뭄대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3	지진재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3	풍수해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수산과	2013	전력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13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문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문화관광실	2014	문화재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축산과	2013	가축질병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도시건축과	201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대비 대응 및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로 인한 상황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및 사항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수산과	2014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총괄과	2014	댐붕괴 재난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호과	201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육상화물운송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설교통과	2013	육상화물운송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수산과	2014	적조재난 발생 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청사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정관리과	2014	청사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관련기관 대응 및 추진체계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경제수산과	2014	해양선박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대규모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보호과	2014	대규모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제반 관리절차 등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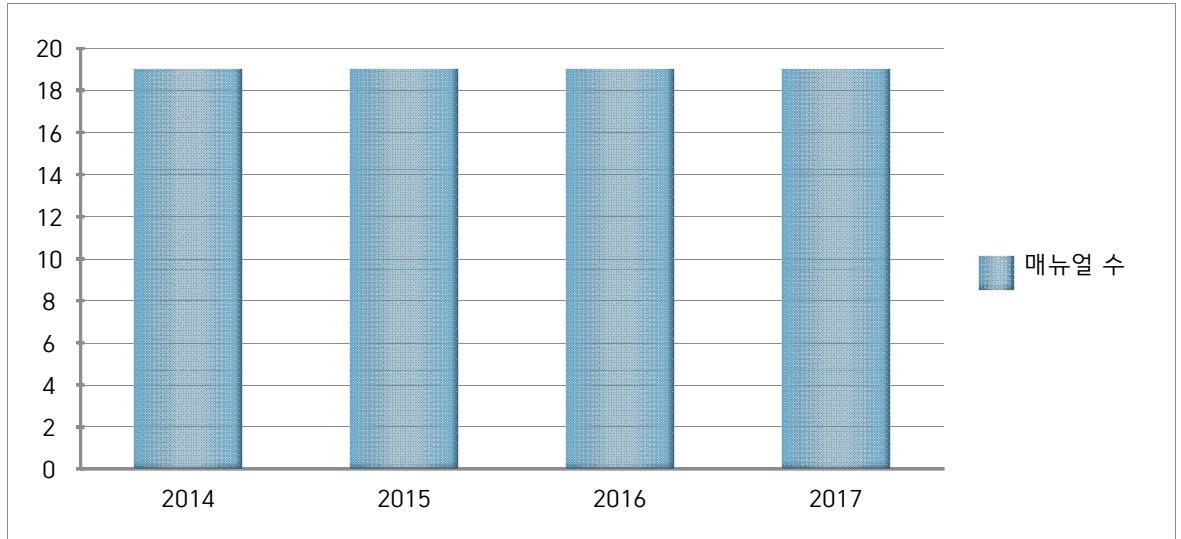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8.17.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적용 민방위경보 요청사항 매뉴얼 추가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8.17.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적용 민방위경보 요청사항 매뉴얼 추가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8.17.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적용 민방위경보 요청사항 매뉴얼 추가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8.17.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편사항 적용 민방위경보 요청사항 매뉴얼 추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9.26.	중앙조직명 변경에 따른 조직명 최신화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풍수해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10.31.	풍수해 대응 지휘부 기능훈련	해당없음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11.1.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훈련계획 수립 시 시나리오 및 훈련반 세부업무 구체화 필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7.11.3.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종합대응 대책	해당없음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매뉴얼 수	19	19	19	19



- 매뉴얼 수의 변동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 및 현행화해 나갈 계획임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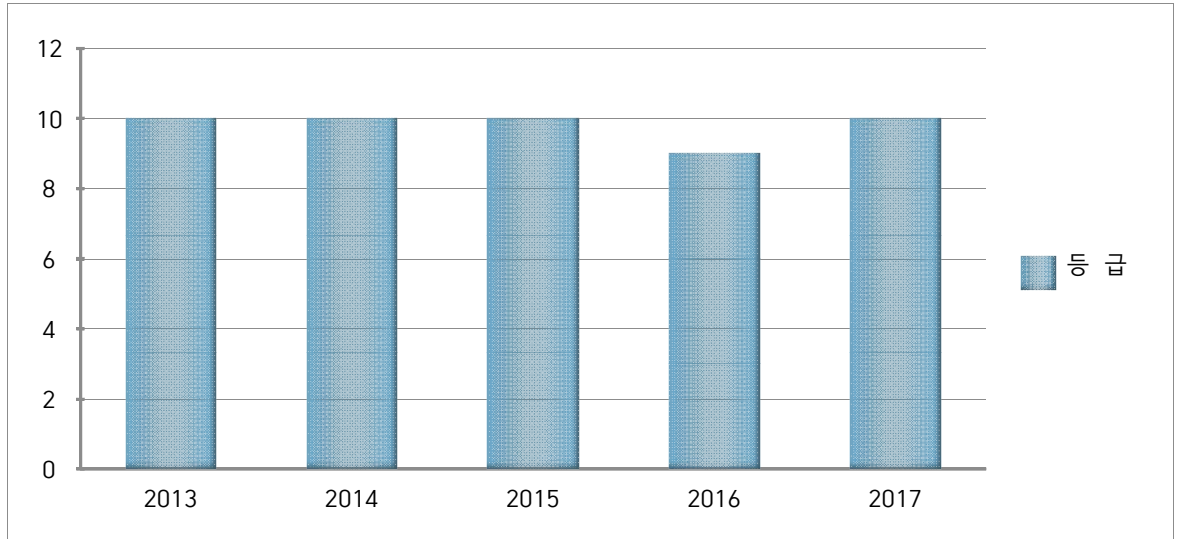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지수	등 급(그룹)
진단결과	0.556	0.667	0.510	0.813	10등급(마)

\* (안전) 1등급/그룹 ‘가’ < - - - - - > 10등급/그룹 ‘마’ (위험)

-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등 급	10등급	10등급	10등급	9등급	10등급



- 위험관리능력 및 방재성능 분야에서는 전년과 점수가 동일하나 위험환경 분야에서 전년대비 0.037점 하락하여 지역안전도 등급이 1등급 하락하였음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년 물놀이 안전명소 선정]

○ 목적

-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정보 제공
- 지자체의 물놀이 관리지역 자율적·체계적 관리 유도

○ 선정개요

- 대 상 :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 선정절차 : 후보추천 → 현장평가 → 서류평가 → 명소선정
- 평가방법 : 민관합동 현장평가, 서류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내용 : 안전성, 경관문화성, 교통근접성, 환경위생, 만족도 등

○ 선정결과(총 4개소 선정)

- 경남 하동군 <황천교>, 강원 철원군 <다슬기축제장>, 강원 정선군 <아우라지>, 전남 구례군 <수락폭포>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하동군 안전총괄과(담당자 : 조철영, 전화 : 055-880-225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8-387호

# 하동군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도 구매 이행계획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우리군의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도 구매 이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1. 제 목 : 하동군 2017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도 구매 이행계획
- 2. 기 관 명 : 하동군청 (사업소, 읍면 포함)
- 3. 담당부서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4.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 “붙임” 참고

붙임 : 1. 2017년도 하동군 녹색제품 구매실적 1부  
 2. 2018년도 하동군 녹색제품 구매계획 세부내역 1부.

2018. 3. .

## 하 동 군 수



기관명 및직책	부서	담당자및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경 상 남 도 하동군	환 경 보 호과	지 방 행 정 서 기 보 김종철	055880256 5	055880256 9	sorrow er015@ korea. kr

녹색구매분류		총구매(일반+녹색구 매)(A)		녹색구매(B)		비율(%) (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561,187	7,065,801	318,496	2,994,881	56.8	42.4		
사무/교 육/영상 /가전	사무기	복사기	16	161,051	16	161,051	100	100	
		팩시밀리	3	834	3	834	100	100	
		세탁기	0	0	0	0	0	0	
		식기세척기	1	7,920	0	0	0	0	
		냉장고	1	953	0	0	0	0	
	가전	공기청정기	0	0	0	0	0	0	
	제품	텔레비전 및 비디오프로젝터	43	31,692	35	25,795	81.4	81.4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0	0	0	0	0	0	
		에어컨디셔너	60	42,372	25	17,655	41.7	41.7	
		책상(탁자)	158	48,001	156	47,463	98.7	98.9	
		의자	543	83,376	120	18,425	22.1	22.1	
	가구	보관용 가구	517	57,911	434	48,667	83.9	84	
		침대 및 침대매트리스	0	0	0	0	0	0	
		주방가구	0	0	0	0	0	0	
		기타 가구 및 부속품	0	0	0	0	0	0	
		OA칸막 이(파티 션)	OA칸막이	149	19,628	77	10,143	51.7	51.7
		인쇄용지	0	0	0	0	0	0	
	지류	사무용지	52	2,010	30	1,159	57.7	57.7	
	기타지류	0	0	0	0	0	0		
일반사 무용품	필기구 및 필기구	0	0	0	0	0	0		
	소모품	0	0	0	0	0	0		
	기타 사무용품	16	405	11	253	68.8	62.5		
개 인 용 컴퓨터	개인용컴퓨터	140	126,081	100	90,057	71.4	71.4		
노트북	노트북 컴퓨터	16	20,360	16	20,360	100	100		
프린터	프린터	4	2,581	0	0	0	0		
전자/정 보/통신	모니터	컴퓨터용 모니터	76	24,890	76	24,890	100	100	
		전자판서 모니터	0	0	0	0	0	0	
	프로젝 터	디지털 프로젝터	0	0	0	0	0	0	
	카트리 지	카트리지(토너/잉크)	0	0	0	0	0	0	
	기 타 소모품	재보충 장치 및 잉크	0	0	0	0	0	0	
섬유/고 무/위생 /여가	작업용 의복	1,139	10,112	600	4,435	52.7	43.9		
	의류	군용 및 경찰용 의복	0	0	0	0	0	0	

		기타 의복	0	0	0	0	0	0	
화 학 / 소 방 / 안전	개 인 장 구	개인장구	212,220	33,536	80,000	12,641	37.7	37.7	
		침구	0	0	0	0	0	0	
		비누	0	0	0	0	0	0	
	위 생 용 품	세제 및 세정제	0	0	0	0	0	0	
		방향 · 소취제	0	0	0	0	0	0	
		화장지 및 종이, 에어 타월	320	10,190	310	9,910	96.9	97.3	
		식품용기	0	0	0	0	0	0	
		봉투	0	0	0	0	0	0	
	포 장 재	포장용기	0	0	0	0	0	0	
		기타 포장재료	0	0	0	0	0	0	
	여 가 용 품	여가용품	0	0	0	0	0	0	
	화 공 약 품	수 처 리 제	수처리제	3,230	76,400	2,000	47,306	61.9	61.9
산업용 탈취제			0	0	0	0	0	0	
소 방 방 제		소화용구	5	4,400	0	0	0	0	
실 내 연 료 유	난 방 연 료	난방연료	0	0	0	0	0	0	
		건설 기	건설중장비	0	0	0	0	0	0
차 량 / 운 반	차 량 용 품	차량용 타이어	0	0	0	0	0	0	
		차량용 엔진오일	0	0	0	0	0	0	
		유압작동유	0	0	0	0	0	0	
		자동차용 부동액	0	0	0	0	0	0	
		비석면 운송부품	0	0	0	0	0	0	
		기타 차량용품	0	0	0	0	0	0	
	특 장 차 발 전 장 치	특장차	0	0	0	0	0	0	
		축전지	0	0	0	0	0	0	
	전 기 / 시 험 / 계 측	램 프 및 안 정 기	형광램프	488	275,753	300	169,520	61.5	61.5
			등기구	2,135	254,220	913	113,248	42.8	44.5
램프용 안정기		0	0	0	0	0	0		
가로등		0	0	0	0	0	0		
전 기 자 재		전선케이블	0	0	0	0	0	0	
기 계 / 설 비	기 타 전 기 자 재	기타전기자재	2	2,704	0	0	0	0	
		냉 온 수 및 정 수 품	정수용품	0	0	0	0	0	0
	보 일 러	가스보일러	0	0	0	0	0	0	
		절수형 수도꼭지	0	0	0	0	0	0	
		수도꼭지 절수부속	0	0	0	0	0	0	
		샤워용품	0	0	0	0	0	0	
		절수형 양변기	0	0	0	0	0	0	
	수 도 차 재	양변기용 부속	0	0	0	0	0	0	
		수도계량기	1,576	76,624	1,480	71,956	93.9	93.9	
		수도꼭지 배관용 정수필터	0	0	0	0	0	0	
수도계량기 보호통		859	98,658	650	73,300	75.7	74.3		
수도용 급수관		0	0	0	0	0	0		

	소변기	0	0	0	0	0	0
일 반 기 계 설 비	산업용 세척기	0	0	0	0	0	0
	기타 기기	0	0	0	0	0	0
아스콘	아스콘	25,332	1,830,270	0	0	0	0
투수콘	투수 콘크리트	12,426	448,083	0	0	0	0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16,087	59,844	0	0	0	0
일 반 폐 복 관	배수관	8,196	287,483	0	0	0	0
	배수조	0	0	0	0	0	0
배 수 조 및 수 받 이	오수받이	0	0	0	0	0	0
	보도블록	53,451	704,504	31,554	379,989	59	53.9
블 록	호안블록	10	3,139	0	0	0	0
	기타 블록	2,537	16,758	2,497	16,493	98.4	98.4
골 재 타 일	골재	0	0	0	0	0	0
	타일	1,060	65,681	0	0	0	0
벽 돌	벽돌	154,572	108,152	145,000	101,454	93.8	93.8
	경계석	0	0	0	0	0	0
가 로 수 보 호 관	가로수 보호관 및 지주대	38	4,349	0	0	0	0
	창호	10,114	190,298	9,961	188,309	98.5	99
토 목 / 건 축	페인트	4,518	138,703	4,000	122,854	88.5	88.6
	벽지	0	0	0	0	0	0
보 온 단 열 재 및 흡 음 재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0	0	0	0	0	0
	건설용 방수재	0	0	0	0	0	0
바 닥 재	바닥장식재	3,531	380,246	3,531	380,246	100	100
	고무바닥재	7,221	452,627	7,099	445,647	98.3	98.5
조 립 식 바 난 방 시 스템	조립식 바닥 난방시스템	0	0	0	0	0	0
	마감재	벽 및 천장 마감재	20,588	54,142	20,546	54,031	99.8
장 식 용 지 시 트	접착제	0	0	0	0	0	0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0	0	0	0	0	0
동 합 금 기 토 목 축	동합금 제품	0	0	0	0	0	0
	기타 토목건축자재	15,161	525,061	4,755	164,676	31.4	31.4
도 로 시 설 / 용 품	교 통 표 지 판 (도 로 안 내 표)	2	295,000	1	147,500	50	50
	도 로 분 리 대 및 난 간 흡 음 관	도로분리대 및 난간 방음벽 및 방음관	0	0	0	0	0

원 부 자 재/기타	도 로 용 품	기타 도로용품	2,574	28,799	2,200	24,614	85.5	85.5
	육 묘 상 자	육묘상자	0	0	0	0	0	0
	인 공 어 초 및 부자	인공어초 및 부자	0	0	0	0	0	0
	흙 막 이 관	흙막이관	0	0	0	0	0	0
	사 료	사료	0	0	0	0	0	0
	토 양 개 량 제	토양개량제	0	0	0	0	0	0
	기타	기타	0	0	0	0	0	0













수도계량기	25,912	21,681	83.7	0	0	0	0	0	0	0	25,912	21,681	83.7
수도꼭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배관용정수필터	111,569	91,188	81.7	0	0	0	0	0	0	0	111,569	91,188	81.7
수도계량기보호통	0	0	0	0	0	0	0	0	0	0	0	0	0
수도용급수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변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산업용세척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기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스콘	2,732,428	0	0	0	0	2,785,876	0	0	3,194	1,010	-50,254	1,010	-2
투수콘크리트	410,271	0	0	0	0	0	0	0	0	0	410,271	0	0
고로슬래그시멘트	0	0	0	0	0	0	0	0	0	0	0	0	0
배수관	376,399	0	0	0	0	75,188	0	0	6,211	0	307,423	0	0
배수조	0	0	0	0	0	0	0	0	0	0	0	0	0
오수받이	0	0	0	0	0	0	0	0	0	0	0	0	0
보도블록	1,484,664	484,491	32.6	0	0	0	0	0	430	186	1,485,094	484,677	32.6
호안블록	40,760	29,517	72.4	0	0	0	0	0	0	0	40,760	29,517	72.4





하동군 공고 제 2018 - 429호

## 2018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동아리를 육성하고 주민주도의 자율적·창조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9.

### 하 동 군 수

#### 1. 공모사업 개요

-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평생학습 기관 및 학습 동아리
- 사업기간 : 2018. 6. 1 ~ 11. 30(6개월)
- 지원규모
  - 평생학습 프로그램 : 5개 기관
  - 평생학습 동아리 : 10개 동아리
- 신청금액
  - 평생학습 프로그램 : 기관 당 최대 2,000천원 이내
  - 평생학습 동아리 : 동아리 당 1,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지원액의 20%이상 대응 투자 필수
  -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공모분야

구분	분야
평생학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별 평생 학습) 민주시민 의식/ 건강가정 육성/ 생태환경 의식 고취/ 주민자치의식 강화/문화예술 활성화 등</li> <li>▪ (소외계층 평생 학습)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등</li> <li>▪ (지역특화 평생 학습) 지역학/지역문화&amp;역사 탐방/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li> </ul>
평생학습 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역량 강화) 동아리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활동</li> <li>▪ (문화예술 활성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li> <li>▪ (재능기부/지역봉사) 지역민을 대상으로 동아리 회원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내용의 봉사활동 등</li> <li>▪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li> </ul>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교재 및 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등

2. 지원 대상 안내

□ 신청자격

- 평생학습 프로그램 : 하동군 소재 평생학습 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
- 평생학습 동아리
  - 하동군 소재 최소 10인 이상 회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 학습활동을 가지며 월회비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평생 학습동아리란?) 공통의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학습과 토론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학습 공동체

◦ 하동군 홈페이지에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 등록·승인된 단체

※ 등록방법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 교육강좌 → 평생학습센터

- ①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등록
- ② 평생학습동아리 : 학습동아리 → 학습동아리등록

□ 지원 제외 대상

- 3년 연속 본 사업에 연속 선정된 기관 및 동아리
- 일회성 행사 및 여행(관광)성 프로그램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정치, 종교단체 등)
- 학자금, 성금, 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후보자 지지, 낙선운동,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목적이나 활동내용의 제한없이 친목도모와 상호교류를 위한 단체 (계모임, 동문회, 향우회 등)
- 조직, 단체 구성원의 단합을 위한 회식 등 내부 행사
- 동일내용으로 사업비의 일부나 전액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경우
- 지역사회 환원(봉사)활동이 저조하거나, 군민에게 혜택이 없는 경우

### 3. 심사방법 및 기준

#### □ 심사방법

- 예비심사 : 지원사업 신청 서류 미비, 신청요건 불충족, 타기관 중복 지원 여부 조사 등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선정심사 : 서면심사 후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
  - ※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 계속 지원단체 및 동아리를 차순위로 처리함

#### □ 심사기준(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105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105점]
1. 사업목적[20점] (사업목적 및 방향성)	1. 사업목적[20점] (사업목적 및 방향성)
2. 추진계획[30점]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성, 지역현안 고려 등)	2. 추진계획[30점] (동아리 활동의 현실성, 구체성 등)
3. 운영기관[25점]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배치,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실적 등)	3. 활동주체[25점] (학습동아리 적합성, 동아리 활동 내용 등)
4. 예산운영[25점] (예산운영계획, 대응투자 기준 충족 등)	4. 예산운영[25점] (예산운영계획, 대응투자 기준 충족 등)
5. 가점[5점] (사회환원 계획, 지역사회 파급효과, 소외계층 지원 등)	5. 가점[5점] (사회환원 계획, 지역사회 파급효과, 소외계층 지원 등)

※ 1기관(단체)당 1프로그램 지원 원칙으로 하며 일회성, 오락성 프로그램 지양

### 4. 서류제출 및 결과 발표

□ 제출기한 : **2018. 4. 16(월) ~ 4. 20(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하동군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① 하동군 → 고시공고란

② 하동군→ 교육강좌→ 평생학습센터→ 공지사항

□ 제출서류 : 붙임참조

평생 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서 1부</li> <li>▪ 사업 계획서 각 1부</li> <li>▪ 기관 소개서 1부</li> <li>▪ 사업자 등록증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신청서 1부</li> <li>▪ 활동 계획서 각 1부</li> <li>▪ 학습동아리 소개서 1부</li> <li>▪ 동아리 회원명단 각 1부</li> </ul>

□ 접수방법 및 제출처

접수방법	제출처	비고
우편접수	(우편번호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행정과 평생학습 부서 공모사업 담당자 앞	4. 20.(금) 소인 인정
방문접수		4. 20.(금), 18시 도착분 까지 인정
이메일접수	jjh225@korea.kr	4. 20.(금), 18시 도착분 까지 인정

□ 문 의 처 : 행정과 평생학습 (055-880-2184)

□ 선정 결과 발표 : 2018. 5. 11(금) 예정

※ 하동군 홈페이지 평생학습센터 공지사항 탑재 예정

※ 결과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기타 사항

- 본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관, 단체 등은 하동군의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활동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0조, 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지원사업으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 및 단체, 동아리는 당해년도 지원불가

# 2018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기관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총괄책임자	담당부서		전 화	
	직 급		FAX	
	성 명		E-mail	
실무담당자	담당부서		전 화	
	직 급		FAX	
	성 명		E-mail	
신청현황	공모분야	<input type="checkbox"/> 영역별 <input type="checkbox"/> 소외계층 <input type="checkbox"/> 지역특화 평생학습(공고내용 참고 택1)		
	사업기간	2018. 6. 1 ~ 11. 30	교육시간	
	교육기간	2018. 0. 0 ~ 0. 0	교육일수	
	교육대상		교육인원	
	총사업비(A+B)	지원금(A)	자부담(B)	자부담비율 (B/A×100)
	원	원	원	%
첨부서류	1.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1부 2. 기관 소개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1부. 끝.			

「2018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관련법령, 규정 등 하동군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하 동 군 수 귀 하

# 2018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

4. 세부계획

교육목표 :

교육기간 :

교육장소 :

교육대상 :

교육인원 :

세부내용

회차	일자	교육내용	강사명	교육시간	비고
...					

교육강사

성명	소속기관	주요활동경력

**【작성방법】**

- 1) 프로그램 개요는 양식에 맞게 교육 목표, 주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시 위 양식을 복사해서 추가 작성

5. 예산 집행계획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합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	
강사비				주강사 홍길동(1급강사) : $(250\text{천원} \times 10\text{h}) + (120\text{천원} \times 20\text{h}) = 4,900\text{천원}$ 보조강사 김철수(5급강사) : $(50\text{천원} \times 10\text{h}) + (30\text{천원} \times 20\text{h}) = 1,100\text{천원}$	
교재비				교육교재 권당 5천원×20명=100천원	
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작성방법】**

- 1) 프로그램 별로 예산항목을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등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
  - ※ 재료비 : 학습활동 관련 소모성 재료비에 한함(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 안됨)
  - ※ 강사비 : 동아리 회원 대상 강사비 지급 불가
  - ※ 식대비 지원 불가(간식비 지원 가능, 식비 필요시 대응투자금액에서 집행)
- 2) 집행단가가 드러나도록 산출내역은 계산식으로 기술
- 3) 세부사항 <별표>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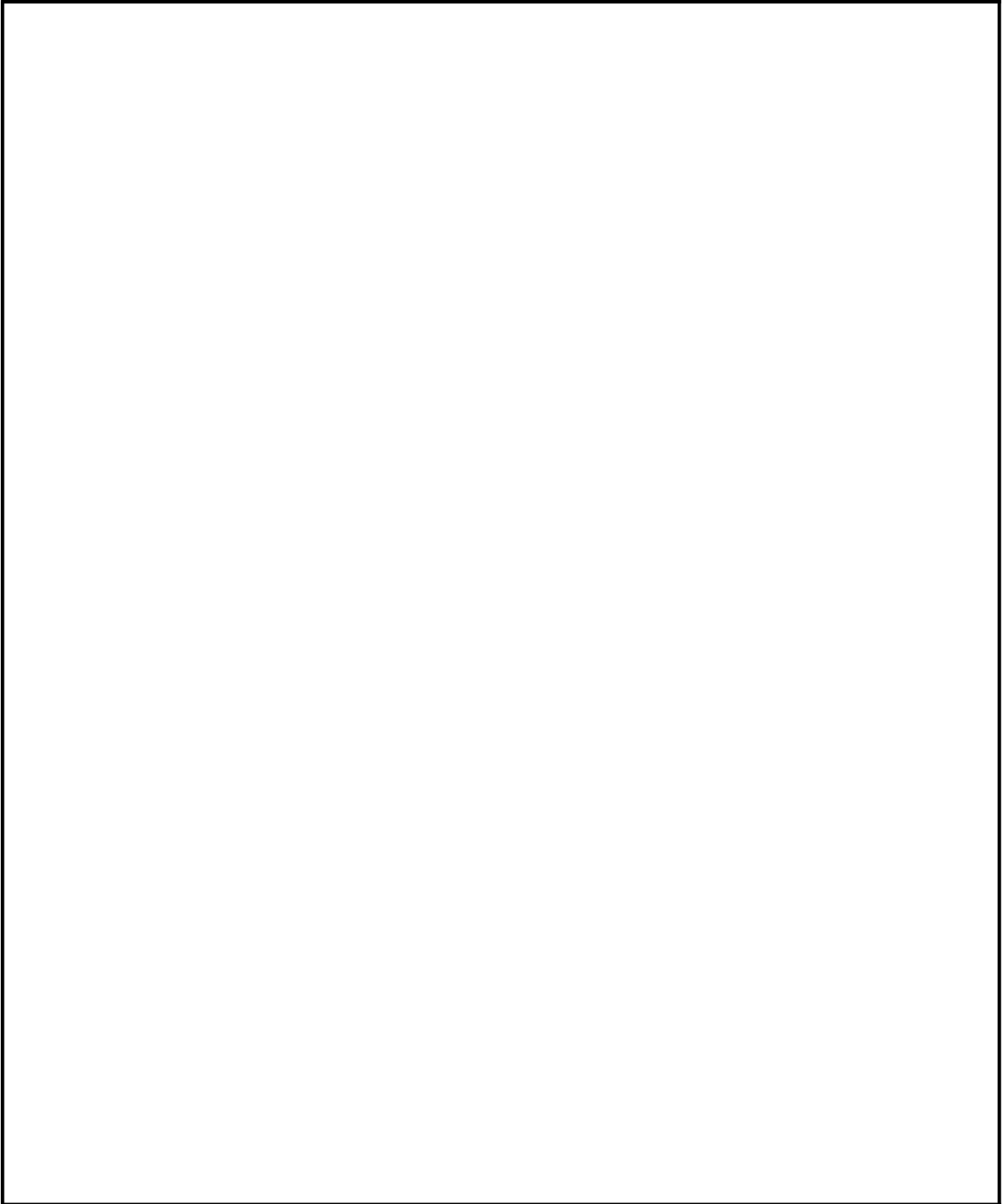
6. 기대효과

- 
- 
-



활동사진 (2017년)		

# 사 업 자 등 록 증









횟수	구분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봉사기관	회수 및 시간
...					

【작성방법】 2018년 실시 또는 예정인 봉사내용(안)에 대해 기재

6. 예산집행계획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합계	지원금	자부담		
합 계				-	
강사비				주강사 홍길동(1급강사) : (250천원×10h)+(120천원×20h)=4,900천원 보조강사 김철수(5급강사) : (50천원×10h)+(30천원×20h)=1,100천원	
교재비				교육교재 권당 5천원×20명=100천원	
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작성방법】

- 1)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운영비, 홍보비 등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
  - ※ 재료비 : 학습활동 관련 소모성 재료비에 한함(자산취득 성격의 물품구입 안됨)
  - ※ 강사비 : 동아리 회원 대상 강사비 지급 불가
  - ※ 식대비 지원 불가(간식비 지원 가능, 식비 필요시 대응투자금액에서 집행)
- 2) 집행단가가 드러나도록 산출내역은 계산식으로 기술
- 3) 세부사항 <별표>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참조

6. 기대효과

- 
- 
-

## 학습동아리 소개서

동아리명		소 속 기관/단체	
설 립 일		회 원 수	
동 아 리 분 류	<input type="checkbox"/> 가정생활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직업관련 <input type="checkbox"/> 교양·취미관련 <input type="checkbox"/> 자격증취득 <input type="checkbox"/> 국제문화이해 <input type="checkbox"/> 예술·문화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성배경			
활동목적	○ ○ ○		
2017년도 주요 활동내용	○ 학습장소 : ○ 학습시간 : ○ 주요학습 및 활동내용 - - -		

활동사진 (2017년)		



<별표>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가.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관(급),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총수(회장) · 전·현직 차관(급) ·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최초 1시간 40만원 · 초과 매시간당 30만원 · 시간보상수당 30만원 · 최초 1시간 30만원 · 초과 매시간당 20만원 · 시간보상수당 20만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 전현직 45급 이상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최초 1시간 25만원 · 초과 매시간당 12만원 ·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중소기업체 임원급 ·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가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13만원 · 초과 매시간당 8만원 ·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과 동등한 강의 경력자	· 최초 1시간 8만원 · 초과 매시간당 5만원 · 시간보상수당 8만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7만원 · 초과 매시간당 4만원 ·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5만원 · 초과 매시간당 3만원 · 시간보상수당 3만원	

※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함

※ 신청기관 소속강사는 지급기준의 50%로 지급함.

⇒ 강사는 근거리(경남 도내) 섭외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원거리 강사를 섭외할 수 있음

⇒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1일 1회 해당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제주)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나.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추가기준)

항 목	기 준	비고
강사비 (근거리 강사섭외 원칙)	▷ 강사비와 회의비는 참여기관의 임직원, 상근자에게 지급 불가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 계좌입금 원칙 ※ 교통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강사의 소속기간에서 지급될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 후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년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추가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및 교육일지(내·외부, 주·보조 강사 구분 표시), 강사자격확인서(이력서), 수강생 등록부(출석부),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사진 첨부	
인쇄비	▷ 경인쇄 권장 - 옅은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기본 : 견적서, 사진 또는 시안첨부,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홍보비	▷ 2018년 하동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임을 명시 ▷ 수강생 대상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품구입은 불가	
임차비	▷ 임차비 지급 내역서(행사명,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 기재한 자료)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사무용품구입 - 사무용품 구입의 경우, 단위사업별 전체예산의 5% 이내로 최소화하여야 함	
재료비	▷ 수업 수행과정(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송금수수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호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수목보호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2년	산림복지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수목보호 전문가	- 10리 벚꽃길 보호사업 총괄 - 기타 가로수 수목보호 관련 업무 수행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수목보호 전문가	(일반임기제 7급상당)	1.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수목보호기술사 소지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사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수목 보호 (3년이상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7급	58,936천 원	41,859천 원	7급(상당)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6.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4. 10(화)	'18. 4. 10 ~ '18. 4. 19	서류전형	-	'18. 4. 23.
		면접시험	'18. 4. 25.	'18. 4. 27.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04. 10 ~ 04. 19/ 10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8. 제출 서류

###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산림녹지과(☎ 055-880-2492)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호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8급상당) 채용시험계획 공고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1명	2년	농업소득과 녹차산업담당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하동야생차박물관 학예연구	- 자료 수집·관리·보존·전시 - 소장유물 보관 관리 및 DB구축 -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자 격 기 준
하동야생차 박물관 학예연구	(일반임기제 8급상당)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b>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b>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li> <li>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ol>

##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임기제 8급	51,705천원	36,882천원	8급(상당)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6.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8. 4. 10(화)	'18. 4. 10 ~ '18. 4. 19	서류전형	-	'18. 4. 23.
		면접시험	'18. 4. 25.	'18. 4. 27.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8. 04. 10 ~ 04. 19/ 10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상당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농업소득과(☎ 055-880-2832)

하동군공고 제2018 - 441호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18년 4월 13일 ~ 5월 2일
- 장 소 : 군청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4월 13일 ~ 5월 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기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FAX 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055-880-2122~6)

2018년 4월 13일

하 동 군 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span style="float:right">원/m<sup>2</sup></span> 의견가격 <span style="float:right">원/m<sup>2</sup></span>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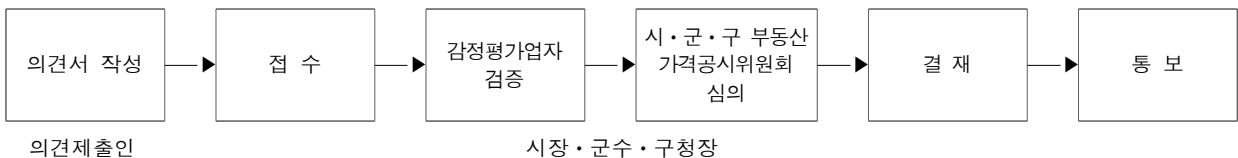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	---------------	--

Person submitting opinion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Perused Price	KRW/㎡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Reasons to submit opinions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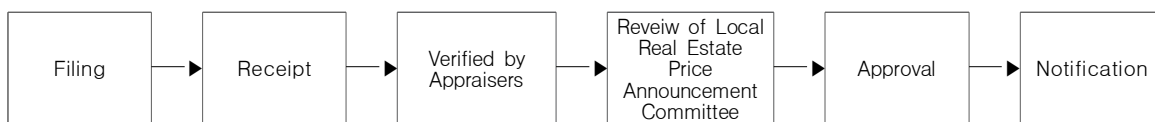
Person submitting opinion

(signature)

To: The head of City, Gun, 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	--	------------

#### Proceedings



Person submitting opinion

The head of City, Gun, Gu

하동군 공고 제2018-443호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7. 4. 12. ~ 4. 27.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8)

##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공시송달 대상자(우편물 반송)

[총건  
수:197  
건]

선택	기분	부과대상 번호	소유자	납기 후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 유
1	2018.1	경남71라 1576	(유)해*기업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75	이사감
2	2018.1	94서5122	강*모	15,75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32-5	이사감
3	2018.1	95도3827	강*모	5,95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32-5	이사감
4	2018.1	경남80두 6462	강*순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회남재로 58	이사감
5	2019.1	경남81무 1655	강*영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10	이사감
6	2018.1	19주4692	강*태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40	이사감
7	2018.1	97러8372	강*태	24,24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40	이사감
8	2018.1	16거2860	강*희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7-1	이사감
9	2018.1	경96루 6451	권*자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36-3	이사감
10	2018.1	전남89다 1845	김*규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152-10	이사감
11	2018.1	93다8735	김*기	9,31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333	이사감
12	2018.1	96무7868	김*기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098-2	이사감
13	2018.1	97거2653	김*남	15,31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155-35	이사감
14	2018.1	07어3511	김*배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48-3	이사감
15	2018.1	경남82나 1912	김*식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이사감
16	2018.1	85거0331	김*식	14,48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이사감
17	2018.1	경남80구 2743	김*준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수척길 12	이사감
18	2018.1	84머9034	김*철	22,77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103-14	이사감
19	2018.1	31나6021	김*철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1길 6	이사감

20	2018.1	96주3242	김*태	9,42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골길 81-5	이사감
21	2018.1	65노2715	김*태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원양샘골길 81-5	이사감
22	2018.1	64소3088	김*하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중기길 92	이사감
23	2018.1	33어8210	김*환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윗길 18	이사감
24	2018.1	72도3876	김*환	11,8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17-6	이사감
25	2018.1	경남81무 6121	김*환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2-4	이사감
26	2018.1	경남80루 8839	남*건설(주)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29	이사감
27	2018.1	63오1044	노*섭	18,2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83	이사감
28	2018.1	84서6898	노*현	22,16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59-6	이사감
29	2018.1	72나3514	노*현	94,35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859-6	이사감
30	2018.1	경남8더 3614	대*건설(주)	23,580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4	이사감
31	2018.1	경남80루 3031	명*동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천길 384	이사감
32	2018.1	경남8므 1992	문*기	84,91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이사감
33	2018.1	62누4842	문*기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이사감
34	2018.1	83보2084	문*용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39	이사감
35	2018.1	70누1231	박*근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문화2길 21-1	이사감
36	2018.1	54구5147	박*심, 천*호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527-3	이사감
37	2018.1	91머3620	박*원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337-1	이사감
38	2018.1	35소4717	박*하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14-13	이사감
39	2018.1	90누1442	박*호	16,46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9-1	이사감
40	2018.1	경남47나 3950	박*희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백석길 13	이사감
41	2018.1	97너4535	백*성	17,19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27-8	이사감
42	2018.1	41두4760	백*전력주식 회사	18,85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65-6	이사감
43	2018.1	07무6640	변*식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2길 9	이사감

				4,910		
44	2018.1	90도6215	성*배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구여의길 7-8	이사감
45	2018.1	경남81무 4586	손*철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마을길 40	이사감
46	2018.1	90어7751	신*건설주식 회사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66, 2층	이사감
47	2018.1	79어7300	신*옥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1	이사감
48	2018.1	경남90자 8315	오*수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구학길 12-71	이사감
49	2018.1	21우4280	오*수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구학길 12-71	이사감
50	2018.1	88더3362	용*지조경주 식회사	19,87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153	이사감
51	2018.1	97나1300	우*정조경(주)	49,82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54	이사감
52	2018.1	85가9484	우*종합건설 (주)	84,9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21	이사감
53	2018.1	경남99바 9193	우*통상(주)	94,35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이사감
54	2018.1	97나1912	유*회사현도 건설	18,2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이사감
55	2018.1	97나1949	유*회사현도 건설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이사감
56	2018.1	93누9982	이*건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24-3	이사감
57	2018.1	96버8489	이*구	23,06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21	이사감
58	2018.1	97오8244	이*규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06	이사감
59	2018.1	97가3283	이*규	21,13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06	이사감
60	2018.1	93무7489	이*규	15,61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06	이사감
61	2018.1	94마7735	이*수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90-5	이사감
62	2018.1	경남81무 6184	이*수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526-3	이사감
63	2018.1	경남7러 1941	이*승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105동 406호	이사감
64	2018.1	65다4521	이*열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28-14	이사감
65	2018.1	97서1400	이*영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48	이사감
66	2018.1	86거7849	이*영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마길 72	이사감
67	2018.1	97나1766	이*옥외1인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길 24	이사감



				23,580		
68	2018.1	부산8라 9870	이*주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단로 5-19	이사감
69	2018.1	83저5424	이*주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단로 5-19	이사감
70	2018.1	65가3213	이*철	4,99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1길 67	이사감
71	2018.1	84가6419	이*철	33,00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1길 67	이사감
72	2018.1	89소8488	이*한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17-6 다동 2호	이사감
73	2018.1	97거5656	이*호	5,3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103동 406호	이사감
74	2018.1	57모9119	이*호	18,85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103동 406호	이사감
75	2018.1	95머1479	임*택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7-17	이사감
76	2018.1	66다1885	장*석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이사감
77	2018.1	68루2050	정*덕	9,2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90	이사감
78	2018.1	97버5118	정*동	17,0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104동 201호	이사감
79	2018.1	82구4170	정*민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1길 7	이사감
80	2018.1	65노2264	정*삼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대내길 40	이사감
81	2018.1	84서9276	정*수	16,56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14-5	이사감
82	2018.1	경남80무 1750	정*식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40-28	이사감
83	2018.1	65노2460	정*열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달구목길 26-4	이사감
84	2018.1	65노2868	정*영	18,58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95	이사감
85	2018.1	61주5579	정*영	23,13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랑수길 17-1	이사감
86	2018.1	97거2180	정*은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3길 14-5 2호	이사감
87	2018.1	92너8814	정*은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문화3길 14-5 2호	이사감
88	2018.1	경남81무 5945	정*호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47	이사감
89	2018.1	경남7도 2606	정*호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47	이사감
90		51라8022	조*식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46	이사감
91	2018.1	96무8792	조*식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46	이사감

				8,200		
92	2018.1	93너5496	조*태	18,69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931	이사감
93	2018.1	경남8즈 1612	조*홍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95-8	이사감
94	2018.1	경남81무 2588	조*홍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95-8	이사감
95	2018.1	경남47가 4466	(주)가*조경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4	이사감
96	2018.1	경남81무 2813	(주)가*조경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1길 14	이사감
97	2018.1	경남82가 1525	(주)경*아스콘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47	이사감
98	2018.1	경남82가 2611	(주)경*아스콘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47	이사감
99	2018.1	96두8680	(주)금*건설	30,74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68	이사감
10 0	2018.1	경남71라 1642	(주)농*샘물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219-85	이사감
10 1	2018.1	73허4701	(주)서*렌터카	21,77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나루터길 8	이사감
10 2		경남99사 1535	(주)오*로직스	90,22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3	2018.1	경남99바 9556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4	2018.1	경남99바 9184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5	2018.1	경남99바 3183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6	2018.1	경남99바 9173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7	2018.1	경남81사 7815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8	2018.1	경남81사 7813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0 9	2018.1	경남99바 9553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1 0	2018.1	경남99바 9182	(주)오*로직스	93,53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1 1	2018.1	경남99바 7653	(주)오*로직스	94,35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1 2	2018.1	경남80아 1540	(주)오*로직스	91,10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3	이사감
11 3	2018.1	21나8766	(주)우*산업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258-23	이사감
11 4	2018.1	79버7668	(주)태*이엔씨	31,8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20길 20, 304 호	이사감

11 5	2018.1	경남47가 6249	(주)평*토건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02-10	이사감
11 6	2018.1	79버7806	(주)하*고속관 광	94,35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210-1	이사감
11 7	2018.1	경남47나 2857	(주)하*랜드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20	이사감
11 8	2018.1	97더6576	천*영농조합 법인	33,020	경상남도 진교면 구고속도로 504	이사감
11 9	2018.1	경남82거 1674	최*익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향도길 38-6	이사감
12 0	2018.1	37고1802	최*철	18,22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7-17	이사감
12 1	2018.1	37주7874	최*철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선길 57-17	이사감
12 2	2018.1	57우2717	최*현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서제길 81-4	이사감
12 3	2018.1	33루3229	하*수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18, 가동 102호	이사감
12 4	2018.1	82저7224	하*용	16,46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작은삼내길 134	이사감
12 5	2018.1	18마5860	하*용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작은삼내길 134	이사감
12 6	2018.1	경남80루 5951	하*토건(주)	49,8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83	이사감
12 7	2018.1	93나2074	한*구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50-1	이사감
12 8	2018.1	87루3014	한*흥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서근속등길 81-9	이사감
12 9	2018.1	49부5233	강*주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하촌길 51-16	수취인 불명
13 0	2018.1	81루6808	강*주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하촌길 51-16	수취인 불명
13 1	2018.1	95주9343	강*주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하촌길 51-16	수취인 불명
13 2	2018.1	08서1024	강*진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윗길 19-1	수취인 불명
13 3	2018.1	95고2827	강*호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168-12	수취인 불명
13 4	2018.1	72루3965	건*노조하동 지회	18,97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6	수취인 불명
13 5	2018.1	27거4462	고*섭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2길 7-5	수취인 불명
13 6	2018.1	66수8961	권*현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2길 5	수취인 불명
13 7	2018.1	80거4189	김*기	24,77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 6-16	수취인 불명

13 8		97나1008	김*상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8-13	수취인 불명
13 9	2018.1	64로8925	김*석	3,89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소재2길 9-4	수취인 불명
14 0	2018.1	92러4143	김*성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촌길 192-7	수취인 불명
14 1	2018.1	02더7980	김*수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174-6	수취인 불명
14 2	2018.1	88저2523	김*옥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경서대로 176	수취인 불명
14 3		96무7187	김*자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47	수취인 불명
14 4	2018.1	16가9629	김*중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515	수취인 불명
14 5	2018.1	17마7735	김*현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48	수취인 불명
14 6	2018.1	경남80라 2793	김*호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27	수취인 불명
14 7	2018.1	97거2680	김*훈	17,06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93-6	수취인 불명
14 8	2018.1	97나9312	김*훈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93-6	수취인 불명
14 9	2018.1	39도5586	남*우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만다리길 130	수취인 불명
15 0	2018.1	61노4908	노*만	4,20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조금1길 44-12	수취인 불명
15 1	2018.1	11두8291	녹*제작원영 농조합법인	10,24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84-1	수취인 불명
15 2	2018.1	47저6874	농업회사법인 (주)더*은농부	18,75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30	수취인 불명
15 3	2018.1	경남81무 2997	대*개발주식 회사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31	수취인 불명
15 4	2018.1	61모4908	문*엽	3,17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조금1길 44-12	수취인 불명
15 5	2018.1	87두4921	박*기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8	수취인 불명
15 6	2018.1	부산80로 9398	박*미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2길 58-19	수취인 불명
15 7	2018.1	경기33마 6506	박*훈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8-4	수취인 불명
15 8	2018.1	82수4630	백*렬	21,53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68	수취인 불명
15 9	2018.1	79고8057	사단법인고* 복지발전협의 회	46,38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5-2	수취인 불명
16		경남81무	서*생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수취인

0		1657		7,300	3774	불명
16	2018.1	95고1007	서*생	13,63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74	수취인 불명
16	2018.1	94우7597	서*생	20,88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74	수취인 불명
16		87고8428	서*생	9,73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74	수취인 불명
16	2018.1	경남7느 1300	서*한	49,82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88	수취인 불명
16	2018.1	경남80두 3126	신*우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조간너리길 15	수취인 불명
16	2018.1	경남47나 2650	안*용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27	수취인 불명
16	2018.1	경남7느 1520	오*영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35	수취인 불명
16	2018.1	경남7러 1452	오*영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35	수취인 불명
16	2018.1	97나1722	오*영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35	수취인 불명
17	2018.1	84다7709	유*희	24,76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29	수취인 불명
17	2018.1	71부5070	이*구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9-25	수취인 불명
17	2018.1	경남81무 1760	이*아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43-5	수취인 불명
17	2018.1	96무7089	이*엠(주)하동 지점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36-12	수취인 불명
17	2018.1	경남7모 3106	이*우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209-3	수취인 불명
17	2018.1	경남90자 4270	이*화	21,87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108	수취인 불명
17	2018.1	부산2머 9716	임*호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차시배지길 18	수취인 불명
17	2018.1	81서7403	장*순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62	수취인 불명
17	2018.1	65거4300	장*한	18,86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큰골목길 16	수취인 불명
17	2018.1	82오3591	정*범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6-3	수취인 불명
18	2018.1	경남5나 6988	정*식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235-1	수취인 불명
18	2018.1	96우6041	정*호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22	수취인 불명
18	2018.1	64머9866	조*래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51-47	수취인 불명
18	2018.1	96우8247	조*래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수취인

3					2451-47	불명
18 4	2018.1	47마8986	조*철	17,81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943-1	수취인 불명
18 5	2018.1	경남72바 9734	(주)강*투어여 행사	94,35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53	수취인 불명
18 6	2018.1	경남72바 9740	(주)강*투어여 행사	94,35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경서대로 53	수취인 불명
18 7	2018.1	경남8코 2847	(주)동*산업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미산길 4	수취인 불명
18 8	2018.1	97나1386	(주)썬*루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232-6	수취인 불명
18 9	2018.1	82버6435	(주)와*지개발	30,740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40길 56	수취인 불명
19 0	2018.1	경남71라 2594	(주)풍*산업	23,58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20	수취인 불명
19 1	2018.1	경남81무 5737	황*규	17,68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77-1 102호	수취인 불명
19 2	2018.1	경남70나 1345	황*이	33,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16-3	수취인 불명
19 3	2018.1	26로9378	이*돌	31,1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금남면 대도길 117-52	수취인 부재
19 4	2018.1	96루9080	이*돌	39,23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금남면 대도길 117-52	수취인 부재
19 5	2018.1	98더2485	다*조경(주)	22,770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38-4	반송함 투함
19 6	2018.1	51부2961	박*근	11,02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104동 502호	반송함 투함
19 7	2018.1	경남82너 3620	이*를	24,77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탈길34번길 14-1	반송함 투함